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

2026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선 주

목 차

제1장 개요	1
1. 세입예산안	1
2. 세출예산안	2
제2장 검토의견	13
1.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증원계획에 관한 검토	13
2. 동일 목적의 예산을 복수의 세부사업에 편성 개선 필요	23
3.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 인력운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등	33
4. 카르텔 환경개선: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39
5. 카르텔환경개선 등: 심사보고서 인쇄비의 집행 방식 개선 필요	45
6.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52
7.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구축되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스템의 운영 필요	59
8.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63
(1)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회의개최 주기에 따른 감액필요	65
(2) 소비자정책 추진 및 추진실적 평가 수당 과다편성 등	70
(3) 광고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지문 및 의견수렴 예산 비목 변경 필요	81

(4)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플랫폼 구축 감리용역 실시 등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85
9. 서울사무소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92
10. 심판관리관실·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국외업무 여비의 집행 계획 철저 수립 필요	98
11. 공정거래지원	101
(1) 공정거래정책알리기: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예산의 집행 방식 개선 필요	102
(2)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민원·사건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및 환류 필요	103
12.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 필요	106
13. 한국소비자원 출연	112
(1) 소비자안전 및 시험검사: 안전 사각지대 위해성 평가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113
(2)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분쟁조정의 사건적체 및 사건 처리 신속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121
1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공정거래종합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127

제1장 개요

1. 세입예산안

○ 2026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702억 5,800만 원(13.0%) 증가한 6,096억 8,400만 원임.

- 세부내역을 보면, 과징금·위약금·가산금·기타 경상이전수입으로 구성되는 경상이전수입이 6,096억 7,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재산이자로 6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감(△)	
			(B-A)	(B-A)/A
<u>재산수입</u>	6	6	-	-
- 기타재산이자	6	6	-	-
<u>경상이전수입</u>	539,420	609,678	70,258	13.0
- 과징금 및 과태료	537,516	607,774	70,258	13.1
- 위약금	1	1	-	-
- 가산금	496	496	-	-
- 기타경상이전수입	1,407	1,407	-	-
합 계	539,426	609,684	70,258	13.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세출예산안

1) 개 요

- 2026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866억 4,800만 원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232억 7,800만 원(14.2%)이 증가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감	
			(B-A)	(B-A)/A
□ 인 건 비	56,152	63,544	7,392	13.2
□ 기 본 경 비	8,935	10,109	1,174	13.1
□ 사 업 비	98,283	112,995	14,712	15.0
○ 계속사업	31,830	32,621	791	2.5
(조정원 출연)	12,757	14,509	1,752	13.7
(소비자원 출연)	53,696	57,146	3,450	6.4
○ 신규사업	-	8,719	8,719	순증
○ 완료사업	-	-	-	-
합 계	163,370	186,648	23,278	14.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 2026년 중점 투자 분야

□ 2026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을 살펴보면,

-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 분석 정확도 향상, 입찰정보 수집 대상 확대 등 담합에 대한 감시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하여 시스템 고도화 예산 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 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의 재구축 및 데이터 표준화, 실태조사 참여 기업 응답 편의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시스템 재구축 예산 7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27.2월 시행)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심의 문서의 법적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심의정보 및 심의 관련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관리·송달·열람할 수 있는 전자심의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6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예산으로 공정거래 전 분야에 원스톱 종합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신설을 위한 예산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음.

(2) 주요 예산구조 개편 사항

- ① 신규사업 :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6,842백만원), 공정거래 조사
지원 운영(1,877백만원)
- ② 사업명칭 변경 : 해당 없음
- ③ 사업 이동 : 해당 없음

2) 인건비

- 2026년도 인건비 예산안은 635억 4,4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2025년 예산인 561억 5,200만 원보다 73억 9,200만 원(13.2%)이 증액된 수준임.
- 인건비의 예산편성인원은 2025년의 684명 대비 146명이 증가한 830명으로, 직제상 정원 797명, 별도정원 15명, 기타직 공무원 18명(전문임기제 5명, 실무수습 13명)을 각각 반영하였음
- 2026년도 보수(110-01목) 예산안은 635억 4,4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13.1% 증액 편성되었음.
- 2026년도 기타직보수(110-02목) 예산안은 6억 5,4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14.4% 증액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연가보상비(110-05목) 예산안은 4억 8,6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15.0%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5예산 (A)	'26예산안 (B)	증감	
			(B-A)	(B-A)/A
○ 인건비	56,152	63,544	7,392	13.2
- 보수(110-01)	55,157	62,404	7,246	13.1
- 기타직보수(110-02)	572	654	83	14.4
- 연가보상비(110-05)	423	486	63	15.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3) 기본경비

- 2026년도 기본경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1억 7,400만 원(13.1%) 이 증액된 101억 900만 원이 편성됨.

〈2026년도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5예산 (A)	'26예산안 (B)	증감	
			(B-A)	(B-A)/A
□ 기본경비 합계	8,935	10,109	1,174	13.1
- 인건비(110)	1,062	1,136	74	7.0
- 운영비(210)	3,753	3,983	230	6.1
- 여비(220)	1,028	1,015	△ 13	△ 1.3
- 업무추진비(240)	382	463	81	21.2
- 직무수행경비(250)	1,770	2,098	328	18.5
- 보전금(310)	22	54	32	145.5
- 민간이전(320)	180	197	17	9.4
- 건설비(420)	311	446	135	43.4
- 유형자산(430)	156	348	192	123.1
- 무형자산(440)	271	370	99	36.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2026년 기본경비 예산안의 주요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 조직 증원에 따른 사무실 공사비 4억 4,000만 원 및 자산취득비 2억 7,8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신규 관사 임차를 위한 무형자산 3억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4) 세출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결산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합 계	155,614	163,370	186,648	23,278	14.2
【일반회계】	155,614	163,370	186,648	23,278	14.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구분	2024 결산	2025예산		2026예산안		증 감	
		본 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총 계	158,366	158,429	158,429	164,791	163,392	4,963	3.1
7001 인건비	52,068	56,152	56,152	63,544	63,544	7,392	13.2
총액인건비성 인건비 (7001-100)	52,068	56,152	56,152	63,544	63,544	7,392	13.2
7011 기본경비	8,441	8,935	8,935	10,152	10,109	1,174	13.1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0)	2,931	3,316	3,316	3,699	3,699	383	11.6
심판관리관실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1)	66	74	74	74	74	-	-
기획조정관실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2)	34	51	51	46	46	△5	△9.8
경쟁정책국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3)	20	26	26	26	26	-	-
조사관리관실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4)	15	20	20	20	20	-	-
소비자정책국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5)	17	20	20	22	22	2	10.0
시장감시국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6)	20	20	20	20	20	-	-
카르텔조사국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7)	75	85	85	90	90	5	5.9
기업협력정책관실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8)	15	23	23	23	23	-	-
서울사무소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9)	290	281	281	299	299	18	6.4
부산사무소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10)	111	92	92	118	118	26	28.3
광주사무소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11)	77	70	70	82	82	12	17.1
대전사무소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12)	70	59	59	73	73	14	23.7
대구사무소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13)	68	56	56	72	72	16	28.6

구분	2024 결산	2025예산		2026예산안		증 감	
		본 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기업집단감시국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14)	58	60	60	63	63	3	5.0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15)	32	27	27	30	29	2	7.4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0)	1,455	1,346	1,346	1,820	1,819	473	35.1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1)	549	325	325	388	388	63	19.4
기획조정관실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2)	652	716	716	753	716	-	-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3)	377	376	376	376	374	△2	△0.5
조사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4)	187	198	198	200	200	2	1.0
소비자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5)	123	145	145	145	145	-	-
시장감시국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6)	108	119	119	133	133	14	11.8
카르텔조사국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7)	111	138	138	165	165	27	19.6
기업협력정책관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8)	88	80	80	93	93	13	16.3
서울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9)	195	231	231	202	202	△29	△12.6
부산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60)	228	211	211	574	574	363	172.0
광주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61)	96	348	348	79	78	△270	△77.6
대전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62)	72	87	87	90	89	2	2.3
대구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63)	80	81	81	81	81	-	-
기업집단감시국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64)	95	136	136	163	163	27	19.9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65)	127	118	118	133	133	15	12.7
7031 행정지원	6,674	7,109	7,109	8,374	8,374	1,265	17.8
공정거래지원(7031-300)	1,298	1,157	1,157	1,248	1,248	91	7.9
행정소송수행(7031-301)	3,248	3,886	3,886	3,890	3,890	4	0.1
전산운영경비(7031-302)	2,129	2,066	2,066	3,236	3,236	1,170	56.6
7032 공정위정보화	6,562	4,746	4,746	13,366	11,262	6,516	137.3
정보화기반확충(7032-501)	3,239	3,259	3,259	2,833	2,833	△426	△13.1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7032-503)	3,323	1,487	1,487	1,587	1,587	100	6.7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7032-504)	-	-	-	8,946	6,842	6,842	순증

구분	2024 결산	2025예산		2026예산안		증 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1231 선진 경쟁정책 추진	1,746	1,947	1,947	3,660	3,659	1,712	87.9
정책연구개발(1231-310)	331	289	289	349	349	60	20.8
대외활동 강화(1231-311)	390	618	618	435	435	△183	△29.6
개도국기술지원(1231-312)	69	79	79	57	56	△23	△29.1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1231-313)	-	-	-	1,877	1,877	1,877	순증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1231-503)	956	961	961	942	942	△19	△2.0
1241 카르텔대응강화	373	842	842	1,752	1,521	679	80.6
카르텔환경개선(1241-320)	373	842	842	1,752	1,521	679	80.6
1251 독과점시장 환경개선	3,718	5,557	5,557	5,597	4,117	△1,440	△25.9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1251-330)	1,738	3,470	3,470	3,470	2,111	△1,359	△39.2
사익편취 행태개선(1251-331)	356	402	402	415	321	△81	△20.1
기업집단포털시스템 운영(1251-332)	1,624	1,685	1,685	1,712	1,685	-	-
1261 시장구조개선	901	629	629	822	822	193	30.7
경쟁제한 규제개선(1261-340)	901	629	629	822	822	193	30.7
127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11,742	12,757	12,757	14,509	14,509	1,752	13.7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1271-350)	11,742	12,757	12,757	14,509	14,509	1,752	13.7
1331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정책 추진	3,072	3,219	3,219	3,846	3,846	627	19.5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정책 추진(1331-400)	2,094	1,718	1,718	2,696	2,696	978	56.9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1331-401)	978	1,501	1,501	1,150	1,150	△351	△23.4
1431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1,337	1,792	1,792	1,453	1,453	△339	△18.9
선진소비자정책추진(1431-600)	1,337	1,792	1,792	1,453	1,453	△339	△18.9
1441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	1,172	1,234	1,234	1,221	1,221	△13	△1.1
소비자권익증진 지원(1441-610)	1,172	1,234	1,234	1,221	1,221	△13	△1.1
1451 소비자보호인프라 운영	4,965	4,755	4,755	5,065	5,065	310	6.5
소비자상담센터 운영(1451-620)	3,592	3,527	3,527	3,877	3,877	350	9.9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1451-621)	1,373	1,228	1,228	1,188	1,188	△40	△3.3
1461 한국소비자원 출연	52,842	53,696	53,696	57,146	57,146	3,450	6.4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630)	52,842	53,696	53,696	57,146	57,146	3,450	6.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5) 성과계획서

(1) 임무와 비전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도 임무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음.

(2) 목표 및 과제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는 3가지 전략목표(‘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와 4개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였음.
- 프로그램 목표별로 설정된 단위사업은 총 12개로 일반재정 10개, 정보화 2개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 공정거래위원회 성과 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구분	전략 목표	프로 그램 목표	단위사업			
			소 계	일반재정	R&D	정보화
개수(개)	3	4	12	10	-	2
비율(%)	-	-	100	83.3	-	16.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과제번호	비고
전략목표 Ⅰ.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경제를 활성화한다			
경쟁촉진	(1) 선진 경쟁정책 추진	Ⅰ-1	세부사업으로 정보화 포함
	(2) 독과점시장 환경개선	Ⅰ-1	세부사업으로 정보화 포함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Ⅰ-1	
	(4) 카르텔대응강화	Ⅰ-1	
	(5) 시장구조개선	Ⅰ-1	
프로그램목표 Ⅰ-2.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공정거래제도 확립에 기여한다			
공정거래 행정지원	(1) 행정지원	Ⅰ-2	
	(2) 공정위 정보화	Ⅰ-2	세부사업으로 정보화 포함
전략목표 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프로그램목표 Ⅱ-1. 중소기업의 공정거래여건을 마련하여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	(1) 대·중소기업간 거래행 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Ⅱ-1	
전략목표 Ⅲ.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프로그램목표 Ⅲ-1. 선진적 소비자정책 추진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한다			
소비자후생 증진	(1) 선진 소비자정책 추진	Ⅲ-1	
	(2)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Ⅲ-1	
	(3) 소비자보호 인프라 운용	Ⅲ-1	세부사업으로 정보화포함
	(4) 한국소비자원 출연	Ⅲ-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6)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증가율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합 계	5,255	5,255	8,506	8,275	57.5
<일반회계>	5,255	5,255	8,506	8,275	57.5
전산운영경비 (7031-302)	2,066	2,066	3,236	3,236	56.6
카르텔환경개선 (1241-320)	842	842	1,752	1,521	80.6
경쟁제한 규제개선 (1261-340)	629	629	822	822	30.7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 (1331-400)	1,718	1,718	2,696	2,696	56.9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2장 검토의견

1.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증원계획에 관한 검토

1)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증원계획과 그 의의

□ 2025년 6월, 제24회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에 대한 증원계획을 수립하였음.

□ 정부가 밝힌 내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증원의 목적과 주요 내용 및 그 규모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상임위원(고위공무원 가급)과 비상임위원¹⁾을 각각 1명 증원(전체 위원: 9인→11인)하여 신속한 사건처리를 도모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 증원계획〉

(단위: 명)

증원 합계	고위공무원 가급	9급(상임위원 비서)
2	1	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비상임위원은 4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원을 증원하여 사건처리를 위한 심의 대기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임.

1) 비상임위원은 직제 개정사항은 아님.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990년대 연간 평균 1,374건에 불과하였던 사건이 최근 5년에는 평균 2,495건으로 크게 증가한 데 반해, 상임 위원은 증원되지 아니하여 최근 5년 기준 평균 소회의 심의 대기 기간도 약 219일에 달함.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임위원을 증원하여 경쟁, 카르텔, 기업거래, 소비자 부문의 4개 심의 분야로 운영할 계획임.

〈소회의 평균 심의 대기기간(구술안건기준)〉

(단위: 일)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5년)
평균 대기기간	89.1	69.2	84.2	113.4	183.4	107.6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5년)
평균 대기기간	234.2	229.5	208.0	251.5	173.8	219.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둘째, 상임위원 증원과 더불어 심판관리관 소속에 심판기능을 보좌하는 인력을 15명 증원하고 카르텔심판담당관을 신설하며, 송무 담당 인력을 4명 확대함.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의 심판보좌인력 증원계획〉

(단위: 명)

직제	합계	4급	4·5급	5급	6급	7급
카르텔심판담당관(신설)	+10	+1	-	+5	+2	+2
기업거래심판담당관	+5	-	+1	+3	+1	-
송무담당관	+4	-	-	-	+2	+2
합계	+19	+1	+1	+8	+5	+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결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도모하고, 과중한 심결 보좌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서는 기존의 경쟁심판담당관에서 담합사건의 심의를 전담하는 카르텔심판담당관을 독립시키고, 최근 업무량이 증가하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를 담당하는 기업거래심판담당관의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임.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가 2010년~2019년 17.2%에서 2020~2024년 24.8%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소송의 난도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행정소송 등을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셋째,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소속으로서 하도급(기술유통) 분야 조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산업하도급조사과를 신설하는 등 전담

인력을 증원함.

또한, 가맹·유통·대리점 분야도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를 위하여 고위공무원인 가맹유통심의관을 신설하여, 그 소속으로 종전의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소속의 가맹거래조사팀을 가맹거래조사과로 정규화하여 배속시키고, 대리점거래조사과를 신설하며 유통거래조사과 인력을 증원하여 배치함.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의 조사인력 증원계획〉

(단위: 명)

직제	합계	고위나	4급	4·5급	5급	6급	7급
신산업하도급조사과(신설)	+5	-	-	-	+3	+2	-
하도급조사과	+6	-	-	+1	+3	+2	-
기술유통조사과	+10	-	-	-	+5	+4	+1
가맹유통심의관(신설)	+1	+1	-	-	-	-	-
가맹거래조사과(신설)	+7	-	-	+1	+3	+2	+1
유통거래조사과	+1	-	-	-	+1	-	-
대리점거래조사과(신설)	+11	-	+1	+1	+4	+3	+2
합계	+41	+1	+1	+3	+19	+13	+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넷째, 시장감시국 소관으로서 디지털 분야 불공정행위의 조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현행 전자거래감시팀을 전자거래감시과로 정규화하는 등 총 34명의 인력을 증원함.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의 조사인력 증원계획〉

(단위: 명)

직 제	합 계	4·5급	5급	6급	7급
전자거래감시과(신설)	+7	+1	+2	+2	+2
서비스업감시과	+5	+1	+2	+2	-
제조업감시과	+7	-	+4	+3	-
지식산업감시과	+11	-	+6	+4	+1
약관특수거래과	+4	-	+3	+1	-
합 계	+34	+2	+17	+12	+3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다섯째, 사건처리 기간의 지연이 다수 발생하는 카르텔조사국의 조사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서비스카르텔조사팀을 서비스카르텔 조사과로 격상함.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의 조사인력 증원계획〉

(단위: 명)

직 제	합 계	4·5급	5급	6급	7급
서비스카르텔조사과(신설)	+6	+1	+2	+2	+1
제조카르텔조사과	+4	+1	+1	+2	-
입찰담합조사과	+4	-	+2	+2	-
국제카르텔조사과	+3	-	+1	+1	+1
합 계	+17	+2	+6	+7	+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여섯째, 신속하고 정확한 경제분석을 위하여 경제분석 인원을 증원하고 조사 업무 전반의 경제분석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카르텔 조사국 산하 경제분석과를 폐지하고, 경제분석담당관을 신설하여

조사관리관에 배치함.

또한, 디지털포렌식 조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포렌식 전문인력을 증원하여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을 신설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의 조사인력 증원계획〉

(단위: 명)

직제	합계	4급	4·5급	5급	6급	7급
경제분석담당관(신설)	+18	-	+2	+12	+2	+2
디지털포렌식담당관(신설)	+19	+1	-	+2	+8	+8
합계	+37	+1	+2	+14	+10	+1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종합하면 내년도 조사·심판 인력증원 소요는 총 150명이고,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른 총액인건비성 인건비는 2025년 예산 561억 5,200만원보다 13.2% 증가한 635억 4,400만원임.

○ 다만, 정기 직제(3월)를 통해 인력증원이 이루어진다는 점, 신규 채용 등 실제 증원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예산안에는 증원되는 인력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인건비만 반영한 것임.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년도 인력증원 계획〉

(단위: 명)

분야	조직 (현 편제 기준)	주요 기능(증원인력 기준)	증원규모
심판	심판관리관 등	위원회 심의(심판) 수행	+17
		소송수행 등 송무 수행	+4
	소 계		+21
조사	기업거래결합심사국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사건처리	+41
	시장감시국	공정거래·소비자 사건처리	+34
	카르텔조사국	담합(카르텔) 사건처리	+17
	소 계		+92
지원	경제분석과	경제분석	+18
	조사총괄담당관	디지털포렌식분석	+19
	소 계		+37
총 계			+15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증원에 따른 직급 변화〉

구 분		합계	정무	고위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기존	정원(명)	647	2	16	12	36	48	212	184	84	27	19	7
	비중(%)	100	0.3	2.5	1.9	5.6	7.4	32.8	28.4	13.0	4.2	2.9	1.1
증원(명)		+150	-	+2	-	+3	+10	+64	+47	+23	-	+1	-
직급조정(명)						+4	-4						
변경	정원(명)	797	2	18	12	43	54	276	231	107	27	20	7
	비중(%)	100	0.3	2.3	1.5	5.4	6.8	34.6	29.0	13.4	3.4	2.5	0.9

* 기타 : 별정직(1), 전문경력관(5), 기록연구관(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증원계획에 대한 문제점 검토

□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증원계획은 사건처리의 장기화라는 그간의 비판을 고려하여 심판·조사에 필요한 실무인력을 중심으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 증원은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인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²⁾을 개정하기 전에는 예산 증액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상임위원의 증원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유한 업무 성격과 함께 다른 위원회 조직의 위원 정수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 정부 부처 중 위원회 조직의 위원 정수〉

(단위: 명)

부처명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전체 위원 정수
공정거래위원회	5	4	9
금융위원회	8	1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7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	4	7
원자력안전위원회	2	7	9
국가인권위원회	4	7	11
국민권익위원회	7	8	15

2)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 둘째, 인력증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현 정원에 비해 지나치게 급격한 증원이 아닌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본부와 지방사무소를 합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 정원은 647명인데, 정원의 약 23%에 달하는 150명의 인력을 갑자기 증원함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증원계획에 따르면 5급 64명, 6급 47명, 7급 23명 등 실무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공무원 채용 절차나 부처 간 인력교류 등을 감안할 때, 특정 직급의 공무원을 단기간에 대규모 증원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정원이 원활하게 충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충원하더라도 업무 전문성의 약화 또는 조직 융화 저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하여야 할 것으로 봄.

- 셋째, 대체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 장기화의 원인을 인력 부족으로만 진단하고 접근하고 있는데, 잦은 순환보직 등과 같은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제도의 개선 논의 등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포렌식 전담인력의 경우 수사기관에 근접한 수준으로 증원을 고려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수준으로 포렌식 전담인력을 한 번에 늘리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유사 기관의 포렌식 전담인력〉

기관명	포렌식 전담인력
공정거래위원회	33명 (14명에서 19명 증원 계획)
대검찰청	41명
경찰청	31명
서울지방국세청	55명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증원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혁신과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규제 인력의 증대에 따른 기업활동의 위축, 규제의 불확실성 증대라는 우려도 상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증원 규모의 타당성에 관한 면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동일 목적의 예산을 복수의 세부사업에 편성 개선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 ‘카르텔조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는 카르텔조사국 운영 경비의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00만원(19.6%) 증가한 1억 6,500만원이 편성됨.
- ☐ ‘카르텔 환경개선’은 카르텔 행태개선, 입찰질서의 공정화, 경제 분석의 운영·지원 및 담합 예방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7,900만원(80.6%) 증가한 15억 2,100만원이 편성됨.
- ☐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은 가맹·유통·대리점분야의 거래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5,100만원(23.4%) 감소한 1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카르텔조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등 3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 A
카르텔조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112	138	165	27	19.6
카르텔 환경개선	738	842	1,521	679	80.6
· 카르텔 행태개선	196	190	140	△50	△26.3
· 입찰질서 공정화	145	144	827	683	474.3
· 경제분석운영	400	458	450	△8	△0.02
· 담합예방 및 국제공조 강화	50	50	100	50	100.0
· 경제분석지원	-	-	5	5	순증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978	1,501	1,150	△351	△23.4
· 가맹·유통·대리점분야 거래행태개선	672	1,192	853	△339	△28.4
· 대리점분야 환경개선	303	305	255	△50	△16.4
· 해외상생협력사례조사	4	4	-	△4	순감
· 가맹·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	-	43	43	순증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협력정책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는 기업협력정책관 운영경비의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00만원 증가(16.3%)한 9,300만원이 편성됨.

□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은 하도급분야의 거래행태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시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7,800만원(56.9%) 증가한 26억 9,600만원임.

<2026년도 ‘기업협력정책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등 2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 A
기업협력정책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88	80	93	13	16.3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2,094	1,718	2,697	978	56.9
· 하도급분야 거래행태 개선	1,652	1,551	2,529	978	63.1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책추진	574	62	52	-	-
· 공시위탁운영	100	105	105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은 디지털 자료의 수집부터 분석 및 관리에 이르는 업무를 전담할 디지털포렌식 조사관을 증원하여 운용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에 신규로 18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은 사건조사 업무에 디지털 자료를 확보·분석·관리하고 법 위반 증거자료를 탐색하는 디지털포렌식 조사 기법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00만원 감소(△ 2%)한 9억 4,200만원이 편성됨.

□ ‘조사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는 조사관리관실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0만원(1.0%) 증가한 2억원이 편성됨.

〈2026년도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 등 3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 A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	-	-	1,877	1,877	순증
· 포렌식 지원	-	-	169	169	순증
· 포렌식 장비확충	-	-	1,692	1,692	순증
· 포렌식 교육	-	-	16	16	순증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	969	961	942	△19	△2
· 장비확충	766	758	671	△87	△11.5
· 유지보수	173	173	241	68	39.3
· 포렌식 교육	30	30	30	-	-
조사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187	198	200	2	1.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검토의견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고 있음.

○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 환경개선’ 사업에서 공공부문의 입찰담합에 대한 과학적·체계적인 감시를 위한 목적으로 2006년부터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6년도에는 해당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하여 전년도 예산 1억 4,400만원보다 4억 9,300만원 증액된 6억 3,700만원을 편성함.

그런데 2026년도 ‘카르텔조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예산안에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업무공간 임차보증료 명목으로 1,270만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됨.

○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 환경개선’ 세부사업과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세부사업에 각각 ‘경제분석지원’(500만원) 내역사업과 ‘가맹·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시정’(4,293만원) 내역사업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음.

그런데, ‘카르텔 환경개선’ 세부사업에서는 이미 주요 시장 및 경쟁법 사건에 대한 경제분석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경제분석운영(4억 5,000만원)’ 내역사업이 있고,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세부사업에도 가맹·유통·대리점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사 활동 지원을 위해 ‘가맹·유통·대리점분야 거래행태개선(8억 5,300만원)’ 내역사업을 두고 있으므로

결국, ‘카르텔 환경개선’ 세부사업과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세부사업에 각각 신규로 신설되는 두 내역사업은 같은 세부사업 내의 기존 내역사업과 목적 및 기능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 사업에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시스템의 재구축 명목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7억 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업협력정책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예산안에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시스템 재구축 용역 임차료와 임대보증금을 1,060만원 편성함.

- 또한, 신규 편성된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은 포렌식조사관의 여비 지급, 장비확충, 교육 등을 위한 사업인데, 이미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 사업에서 포렌식 장비확충 및 교육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조사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에서 역시 포렌식 조사관의 출장여비 등을 편성하고 있음.

〈동일 목적의 사업을 분산하여 편성한 사례〉

사업명 및 예산		
카르텔 환경개선	카르텔조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고도화 6억 3,700만원 - 경제분석운영 4억 5,000만원: 연구원 인건비, 여비, 사업추진비, 연구용역비 - 경제분석지원 500만원(신규): 여비, 사업추진비	-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고도화 업무공간 임차료 770만원(신규) -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업무공간 임차보증료 500만원(신규)	
대중소기업 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	기업협력정책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시스템 재구축 개발비 4억 8,900만원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시스템 재구축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 8,600만원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시스템 재구축 용역임차료 560만원(신규)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시스템 재구축 임대보증금 500만원(신규)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신규)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	조사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 포렌식조사관 국내여비 1억 6,900만원 - 포렌식 장비확충 16억 9,200만원 - 포렌식 교육1,600만원	- 포렌식 장비확충 (6억 7,100만원) - 포렌식 교육(3,000만원)	- 포렌식조사관 국내여비 5,760만원 - 포렌식조사관 국외여비 530만원 - 포렌식 조사관 업무추진비 280만원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확립		
- 가맹·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6,610만원: 조사계획서 인쇄비, 현장조사비, 조사 관련 관계자 업무협의비 - 가맹·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1,700만원(신규): 심사보고서 인쇄비, 현장조사비, 조사 관련 관계자 업무협의비		

(자료: 전문위원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조사국과 기업협력정책관실의 비총액 인건비성 기본경비에 각각 편성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과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시스템 재구축 사업은 모두 용역 사업수행자가 상주할 공간에 대한 임차료와 임대보증금 관련 예산인데,

이는 정부안 편성과정 중에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었고 직제 개편이 이루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 인력증원으로 인하여 청사 내 용역 사업수행자가 상주할 사무실 확보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부득이하게 외부 임차를 위한 예산을 기본경비에 편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함.³⁾

□ 동일한 세부사업(‘카르텔 환경개선’ 및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확립’) 내에서 서로 다른 내역사업으로 편성한 사례 역시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증원으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기존 내역사업은 모두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증액 신청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신설하여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 한편,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과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에 분산하여 편성한 포렌식 장비 예산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사업(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은 직제 개편으로 증원될 인력이 사용할 수집용·분석용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이고, 종전 사업(디지털 포렌식센터 운영)은 포렌식 소프트웨어의 연간 사용권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양자가 서로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3) 실무적으로 정부안 편성 시 사업비 편성을 먼저 완료하고 기본경비를 편성하기 때문임.

위의 사업들에 대해 제시한 것처럼 정부안 편성과 직제 개편의
시차로 인해 불가피하게 서로 다른 사업에 편성되었다는 의견임.

□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한 목적의 예산을 서로 다른 세부사업에
편성한 것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과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시스템
재구축 관련 사업은 같은 목적의 예산인데도 다른 프로그램⁴⁾에 각각
편성할 경우 예산을 사업별로 분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임.

○ 특히 행정부가 사업의 성과와 책임을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였고, 세출예산을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러한 편성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아울러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과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
모두 디지털포렌식을 위한 장비를 확충하려는 사업이라는 점, 두
사업에 편성된 교육 예산은 동일한 전문교육이라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이들을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할 실익도 적음.

○ 장비확충 예산의 경우 오히려 하나의 사업에서 통합 발주함으로써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고, 관리의 효율을 기할 수 있으며,
전문교육 예산도 매년 20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4) 기본경비는 모두 ‘7000 공정거래 행정지원’ 프로그램이고, ‘카르텔 환경개선’ 사업은 ‘1200 경쟁촉진’, ‘대
중소기업 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 사업은 ‘1300 중소기업경쟁여건 개선’ 프로그램임.

내부 규정에 따른 편성인바 기존 인력과 증원 인력을 나누어
실시할 실익은 적음.

〈최근 3년간 디지털포렌식 전문교육 현황〉

일정	장소	교육과정	수료인원	교육시간 (이수시간)
2023. 4. 17. ~ 4. 19. 10. 10~10. 12 (3일)	공정위 디지털포렌식 교육장	디스크포렌식(Encase, EnScript) 분석, 클라우드 포렌식, 시나리오기반 디지털포렌식, 모바일포렌식 획득, 분석, 최신 주요기술 사례	12	24
2024. 8. 19. ~ 8. 21. (3일)	공정위 디지털포렌식 교육장	디스크포렌식(Encase, X-Ways) 활용 / 모바일포렌식 획득, 분석심화	13	24
2025. 9. 30. ~ 10. 2 (3일)	공정위 디지털포렌식 교육장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기법, Encase, Autopsy를 이용한 디지털 포렌식 기법, 잔디/팀즈/슬랙/클라우드/VDI 탐색 및 수집기법, 최신 디지털포렌식 사례 및 판례	15	2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경비에 편성된 임차료
예산은 각각 ‘카르텔 환경개선’, ‘대중소기업 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으로 이관하고, 같은 세부사업 내에 동일한 목적으로
편성한 신규 내역사업 예산은 기존 내역사업으로 이관하며, 신규로 편성한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 사업은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으로
통합하는 한편, 포렌식 조사관의 여비는 종전처럼 ‘조사관리관실 비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봄.

3.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 인력운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등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은 디지털 자료의 수집부터 분석 및 관리에 이르는 업무를 전담할 디지털포렌식 조사관을 증원하여 운용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에 신규로 18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 A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	-	-	1,877	1,877	순증
· 포렌식 지원	-	-	169	169	순증
· 포렌식 장비확충	-	-	1,692	1,692	순증
· 포렌식 교육	-	-	16	16	순증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검토의견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조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사건처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2013년부터 디지털포렌식 조사인력을 운용하고 있음.

- 2013년 1명의 민간전문가를 충원한 이후 2017년 이래, 14명 체제로 운영 중이고 각 조사관은 모두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 직급의 일반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조사총괄담당관실에서 근무 중임.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포렌식 조사인력 현황〉

직급/직위	근무기간
행정주사(일반임기제)	2017.12.04. ~ 현재
행정주사(일반임기제)	2017.12.04. ~ 현재
행정주사(일반임기제)	2018.02.07. ~ 현재
행정주사(일반임기제)	2017.12.04. ~ 현재
행정주사(일반임기제)	2020.04.06. ~ 현재
행정주사(일반임기제)	2023.02.01. ~ 현재
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2017.12.04. ~ 현재
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2020.07.20. ~ 현재
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2023.03.13. ~ 현재
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2023.03.13. ~ 현재
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2023.12.18. ~ 현재
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2024.01.15. ~ 현재
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2024.09.09. ~ 현재
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2024.09.30. ~ 현재

-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포렌식 조사인력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은 2014년 도입 당시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있었고,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비교적 높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우수한 외부 인력이 지원할 유인으로 작용하는 장점 때문으로 보임.⁵⁾

□ 다만, 근무 인력의 신분 불안에 따른 근로 의욕의 저하 가능성, 조직 확대 계획에 따른 인력 추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포렌식 조사인력 운용에 관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면 정기적으로 성과평가를 함으로써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중단하고 신규 채용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계속 조달하여 최신 조사기법이나 장비 운용 기술의 전파 등 효과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 조사총괄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조사인력 중 상당수가 근무 기간 5년 이상의 장기근무자인데, 일반임기제는 「공무원 임용령」 6)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의 범위에서만 근무할 수 있고 예외적

- 5) 「공무원 보수규정」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③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50퍼센트(「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17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
1. 봉급
 2. 정근수당
 3. 관리업무수당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 ④ 소속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할 수 없거나 같은 항에 따라 책정한 연봉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6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6) 「공무원 임용령」 제22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단서 생략)
-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후단 생략)
-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제16조제7항에 따라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후단 생략)

으로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 한정하여 최대 5년 단위로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근무 인력의 상당수는 성과가 탁월하더라도 계약해지 가능성에 따른 불안이 있고 정기적으로 계약 갱신도 하여야 하므로 조직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맹점도 있음.

또한, 대부분의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신분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이고,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의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서 일부 조사인력으로부터 신분 안정에 대한 요구가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인력 운용의 방향에 대한 기관 차원의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역량 증대라는 목적으로 19명의 포렌식 전담인력을 추가함으로써 총 33명으로 증원하여 운용할 계획이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사역량의 강화 및 최신 조사기법의 도입 등 포렌식 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고려하면 향후 추가적인 증원 추진 가능성도 있으므로 모든 포렌식 조사인력을 일반임기제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함께 인력의 탄력적 운용 필요성 등에 관한 종합적 검토도 필요함.

-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포렌식 전담인력과 관련한 보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포렌식 전담인력의 전문성 증진을 위하여 동 사업과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 사업에 포렌식 조사관 전문교육 명목으로 각각 1,600만원(총 3,200만원)의 예산은 반영하였고,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 사업에는 포렌식 전문가양성을 위한 외부기관 위탁 교육(서울대학교) 명목으로 교육 파견 인력 1명분의 예산 1,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검찰청 직무 교육으로 실시 중인 포렌식 수사 과정(1주)에도 연간 2명 내외의 인력을 파견 중임.

○ 그러나 포렌식 조사관 전문교육은 운용 중인 포렌식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 등을 주된 콘텐츠로 하는 교육 이고, 서울대학교 위탁 교육은 장기교육훈련이므로 교육 이수 후 의무복무 규정이 적용되는바 일반임기제 공무원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교육이며, 검찰청 직무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주안점을 두는 교육이라는 한계가 있음.

□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포렌식 물품,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입 등을 위하여 총 16억 9,200만원을 자산취득비 (430-01) 편성하였는데,

이 중 1억원은 포렌식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아닌 개발비 명목 으로 편성한 것 인바, 이를 자산취득비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일반연구비(260-01) 비목을 신설하고 1억원을 이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4. 카르텔 환경개선: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카르텔 환경개선”은 카르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 등을 상시 감시하여 카르텔을 예방·적발·시정하고, 입찰담합 감시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담합사건을 적극적으로 적발 및 시정하며, 주요 경쟁법 사건에 대한 경제분석을 하여 경쟁법 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7,900만원 (80.6%) 증가한 15억 2,1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카르텔 환경개선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카르텔 환경개선	738	842	1,521	679	80.6
· 카르텔행태개선	184	190	140	△50	△26.3
· 입찰질서공정화	142	144	827	683	474.3
· 경제분석운영	366	458	450	△8	△1.8
· 담합예방 및 국제공조 강화	46	50	100	50	100.0
· 경제분석지원	-	-	5	5	순증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Ⅱ-1)

2) 검토의견

- “입찰질서공정화” 내역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8,300만원 증액된 8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으로 6억 3,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⁷⁾는 공공부문의 입찰과 관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도입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은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수집하여 입찰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의 계량적 분석을 통해 입찰 담합의 징후를 포착하는 등 효율적인 담합 감시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임.

〈시스템 구축 경과〉

연도	내 용
2006	☐ 입찰상황판(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구축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집행되는 50억 이상 공사, 25억 이상 물품·용역에 대한 입찰정보 수집

7)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의 범위 및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도	내 용
2009	☐ 연계기관 추가 확대 - 입찰정보 연계기관을 조달청 외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보유 11개 공기업까지 확대(총 12개 기관)
2018	☐ 시스템 고도화 - 입찰유형별 평가지표 및 투찰이력분석 등 도입 - 수집 대상 입찰정보 확대(물품·용역 입찰 5억 → 1억 이상) - 입찰정보검색기능 탑재, 입찰정보 연계방식 개선 등 시스템 활용성 및 유지관리성 제고
2021	☐ 연계기관 추가 확대 - 강원랜드, 국가철도공단, 한전KDN, 신규 연계 기관 추가로 총 16개 기관 입찰정보 연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2023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OnBid, 공공자산처분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음.⁸⁾

○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입찰담합 감시 범위를 기존 구매입찰에서 판매입찰까지 확대하고(구매→구매+판매), 분석 정확도 및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10개월의 사업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 주요 내용〉

- | |
|---|
| (1) 온비드 연계
- 현행 시스템은 구매입찰정보만 수집·감시하였으나 판매입찰(자산매각, 임대 등의 수익사업 입찰)까지 감시범위 확대 추진
* 판매입찰정보와 구매입찰정보는 데이터형식이 상이해 판매입찰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필요
(2) 기능개선
- 최종 투찰 결과만 수집되는 現 시스템을 개선해 유찰 시 기존 입찰 정보까 |
|---|

8)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확대됨(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 정보수집 대상을 확대
- 발주기관 간 상이한 물품 분류체계를 통일하기 위한 물품군 통합 기능 개선
- 반복되는 입찰에서 참여자가 번갈아 낙찰받는 패턴의 유무 및 정도, 입찰참가자의 주소지 간 거리 등을 평가지표에 추가 등
(3) G 클라우드 전환
-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입찰담합징후를 분석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 예상 추진 일정〉

구분	1차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능개선 및 평가지표 고도화												
클라우드 이전												
ONBID 연계 및 담합징후 분석 확대												
감리												

※ 과업 기간 등은 추후 과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 예정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그런데, 「소프트웨어 진흥법」⁹⁾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¹⁰⁾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만 40

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4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방식) ①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10)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입찰공고(제안요청서 포함)→제안서 제출/가격입찰→제안서 제출일 경우: 평가위원회 구성→제안서 평가→가격평가→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협상 적격자 통지→협상 실시(우선 순위 협상 대상자)→협상 성립→(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 협상)→낙찰자 선정→계약 체결

일 이상(긴급한 경우 10일 이상) 소요¹¹⁾되는 등 사업자 선정에 상당 시간이 필요함.

- 참고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협상계약의 표준행정소요일수는 89일, 목표행정소요일수는 69일임.¹²⁾

○ 또한, 소프트웨어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과업심의위원회¹³⁾의 심의를 거친 후 발주하여야 하므로,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11)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입찰공고)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2)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3조(표준행정소요일수 등) ① 구매계약 목표(표준)행정소요일수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요청서가 도달한 날부터 구매계약체결(계약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전자서명 또는 날인)을 완료한 날까지로 하되, 계약방법별 목표(표준)행정소요일수는 [별표1]에 따른다. 다만, 수요기관과 구매규격 등에 대하여 문서로 협의한 기간 또는 도달한 날 다음 날이 휴무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기간은 제외한다.

[별표 1] 내자구매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협상계약 부분만 발췌)

계약방법			표준행정소요일수 (조달수수료 면제기준일수)	목표행정소요일수	비고
경쟁계약	국내입찰	협상계약	89일	69일	

1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내에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5. 카르텔환경개선 등: 심사보고서 인쇄비의 집행 방식 개선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관리관실,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 집단감시국,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및 각 지방사무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카르텔환경개선” 세부 사업 등 11개 세부사업의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억 400만원(13.5%) 감소한 64억 2,5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카르텔환경개선 등 11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카르텔환경개선	373	842	1,521	679	80.6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1,738	3,470	2,111	△1,359	△39.2
사익편취 행태개선	356	402	321	△81	△20.1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978	1,501	1,150	△351	△23.4
카르텔조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111	138	165	27	19.6
서울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195	231	202	△29	△12.6
부산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228	211	574	363	172.0
광주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96	348	78	△270	△77.6
대전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2	87	89	2	2.3
대구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80	81	81	-	-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127	118	133	15	12.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

2) 검토의견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관리관실,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집단감시국, 기업거래결합심사국과 각 지방사무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 인지된 사건 중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회의 또는 전원회의에 상정하며, 이때 제출되는 심사보고서는 사건의 개요, 시장구조 및 실태, 위법성 판단, 조치의견 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있음.¹⁴⁾ 심사보고서와 첨부자료는 각 회의에 제출과 동시에 피심인에게도 송부됨.¹⁵⁾

14)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사건의 처리기간) ① 심사관은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사건의 경우 9개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경우 13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거나 제61조에 따라 전결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조사관리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5조(심의절차의 개시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송부) ① 위원회는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하였을 때 심의절차를 개시한다.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2. 시장구조 및 실태
3. 제도개선사항의 유무
4. 사실의 인정
5.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
6.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운영상황의 조사여부
7. 심사관의 조치의견(공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표문안을 포함)
8. 피심인 수락 여부(전원회의 소관사건은 제외)
9. 첨부자료

10.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 대상

15)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심의절차의 개시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송부) ⑩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심인에게 심의절차의 개시 사실을 고지하고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의 목록 및 첨부자료(이하 "첨부자료 등"이라 한다)를 송부(피심인에게 송부되는 심사보고서와 첨부자료 등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제외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및 심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심사보고서와 첨부자료는 위원회 구성원(3~9명) 및 피심인 모두에게 종이문서 형태로 제출 및 송부되고 있으며,¹⁶⁾ 이에 따라 매년 심사보고서 인쇄비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고 있음.

- 2024년 심사보고서 인쇄비 집행액은 4억 7,310만원이고, 2025년에는 3억원(9월 기준)이 집행되었음.

-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에 조사 분야의 대규모 인력 증원을 예정하고 있는 바, 조사 인력의 증원으로 직권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심사보고서의 인쇄비 집행액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2026년 조사 부서와 각 지방사무소의 심사보고서 관련 인쇄

다)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4주(소회의에 제출되는 심사보고서의 경우 3주)의 기간 내에 심판관리관에게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심의에 부쳐야 하는 경우, 피심인의 모기업이 외국에 소재하거나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여 의견제출에 4주(소회의에 제출되는 심사보고서의 경우 3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6)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심사보고서 분량은 수백~수천 페이지(첨부자료 포함)에 달하고, 담합사건의 경우 한 사건에 2개~30여개 피심인이 포함되며 각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있음.

비는 2025년 예산 3억 5,609만원 대비 5,183만원(14.6%) 증액된 4억 792만원이 편성되었음.

〈일반수용비 중 심사보고서 관련 인쇄비로 편성된 예산 현황〉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 산출내역	2026년 예산안 산출내역
카르텔조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 심사보고서 인쇄비: 19,200천원	· 심사보고서 인쇄비: 19,200천원
기업거래결합 심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 하도급 사건 심사보고서 인쇄비: 5,063천원 · 유통·대리점 사건 심사보고서 인쇄비: 5,000천원 · 가맹 사건 심사보고서 인쇄비: 5,545천원 · 기업결합 사건 심사보고서 인쇄비: 5,000천원	· 하도급 사건 심사보고서 인쇄비: 3,000천원 · 유통법 사건 심사보고서 인쇄비: 3,000천원 · 대리점 사건 심사보고서 인쇄비: 4,500천원 · 가맹 사건 심사보고서 인쇄비: 4,500천원 · 기업결합 사건 심사보고서 인쇄비: 16,200천원
카르텔환경개선	· 카르텔사건 심사보고서 인쇄비: 100,200천원 · 입찰담합사건 심사보고서 인쇄비: 78,000천원	· 카르텔사건 심사보고서 인쇄비: 48,000천원 · 입찰담합사건 심사보고서 인쇄비: 116,400천원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 독과점시장 행태개선 · 심사보고서 인쇄 등: 20,000천원 ☐ ICT분야 경쟁법 집행역량 강화 · 심사보고서 인쇄 등: 5,000천원	☐ 독과점시장 행태개선 · 심사보고서 인쇄 등: 50,000천원 ☐ ICT분야 경쟁법 집행역량 강화 · 심사보고서 인쇄 등: 5,000천원
사익편취 행태개선	· 심사보고서 등 유인비: 37,050천원 · 사익편취 사건처리 관련 인쇄비: 10,672천원	· 심사보고서 등 유인비: 48,300천원 · 사익편취 사건처리 관련 인쇄비: 11,776천원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 가맹·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 조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인쇄비: 22,000천원 · 가맹본부,대형유통업체,납품업체 조사관련 인쇄비(봉투포함): 9,000천원	☐ 가맹·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 조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인쇄비: 16,000천원 · 가맹본부,대형유통업체,납품업체 조사관련 인쇄비(봉투포함): 9,000천원 ☐ 가맹·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 심사보고서 인쇄비: 17,000천원
서울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 심사보고서 및 기타자료 인쇄비: 27,000천원	· 심사보고서 및 기타자료 인쇄비: 27,000천원
부산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 심사보고서, 홍보물 및 교육자료 인쇄비: 2,000천원	· 심사보고서, 홍보물 및 교육자료 인쇄비: 2,000천원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 산출내역	2026년 예산안 산출내역
광주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 심사보고서 인쇄비: 3,360천원	· 심사보고서 인쇄비: 5,040천원
대전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 인쇄비 및 유인비: 2,000천원	· 인쇄비 및 유인비: 2,000천원
대구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	-
합 계	3억 5,609만원	4억 792만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 토대로 재작성)

□ 최근 3년간의 심사보고서 등 조사 업무와 관련한 인쇄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10억 5,700만원 중 95.7%(10억 1,180만원)가 2개의 인쇄업체에 집중되어 있음.

〈최근 3년간 업체별 인쇄비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말	합 계
A업체	203,135	321,125	204,981	729,241
B업체	54,509	132,196	95,864	282,569
C업체	24,532	19,786	-	44,318
D업체	964	-	-	964
합 계	283,140	473,107	300,845	1,057,09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최근 3년간 집행 내역 중 건당 500만원 초과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지급일	지급내역	지급액	비고
A업체	2023-04-04	심사보고서 인쇄 비용	7,868	
	2023-06-19	인쇄비 지급	6,174	
	2023-09-01	심사보고서 인쇄비	8,467	
	2023-10-24	심사보고서 등 인쇄비 지급	9,739	
	2023-12-19	심사보고서 인쇄대금 지출	8,316	
	2023-12-21	인쇄비(심사보고서 등)	6,007	
	2023-12-27	인쇄비(심사보고서)	6,325	
	2024-01-30	심사보고서 인쇄비	9,392	
	2024-02-21	심사보고서 인쇄대금 지출	5,310	
	2024-04-01	심사보고서 인쇄비 지급	5,315	

구 분	지급일	지급내역	지급액	비고
	2024-04-08	심사보고서 인쇄비	8,789	
	2024-04-08	주요 사건 자료집 인쇄비	5,225	
	2024-07-16	심사보고서	8,582	
	2024-08-13	심사보고서 인쇄비 지급	5,862	
	2024-08-13	심사보고서	5,766	
	2024-12-13	심사보고서 인쇄비	6,144	
	2024-12-13	심사보고서 인쇄비	6,289	
B업체	2023-10-23	인쇄비 지급(심사보고서 등)	9,903	
	2023-12-22	인쇄비(심사보고서 등)	5,015	
	2023-12-22	심사보고서 인쇄대금 지출	5,808	
	2024-08-28	인쇄비 지급(심사보고서)	5,753	
	2024-11-20	인쇄비 지급(심사보고서)	10,791	
	2024-11-21	심사보고서 소갑자료 인쇄비	7,414	
	2024-11-21	심사보고서 인쇄비	16,918	
	2024-11-22	인쇄비 지출(심사보고서)	16,280	
C업체	2023-11-28	심사보고서 인쇄대금 지출	21,032	
총 합(26건)			218,48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를 도태로 재작성)

○ 인쇄업체 두 곳에 집행이 집중되는 사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업체가 다년간 꾸준히 거래하여 업무 이해도가 높고 품질 등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되어 있고, 심사보고서 등 사건 관련 자료들은 사건 및 기업에 관련된 주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여러 업체에 분산하여 맡길 경우 정보 유출 등 보안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하지만, 심사보고서 인쇄비는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연중 계속해서 발생하는 필수 경비라는 점에서, 소수의 업체에 한정하여 집행하기보다는 보안과 품질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여러 업체를 활용하는 등 집행의 다변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인쇄비 절감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도에 구축하고자 하는 전자심의시스템¹⁷⁾을 활용하여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보고서 인쇄비의 집행이 소수 업체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므로 집행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7) 2026년도 예산안에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7032-504)

6.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은 독과점 시장구조가 고착화된 업종 및 신산업 분야인 온라인 플랫폼 등 ICT 분야에 대한 상시·체계적 감시를 통해 거래행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독과점시장 행태개선, ICT분야 경쟁법 집행역량 강화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억 5,900만원(39.2%) 감소한 21억 1,1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1,738	3,470	2,111	△1,359	△39.2
· 독과점시장행태개선	131	129	227	98	76.0
· 신고포상금제도운영	1,465	3,200	1,751	△1,449	△45.3
· ICT분야 경쟁법 집행 역량 강화	142	141	133	△8	△5.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

2) 검토의견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행위 중 신고로 인한 적발이 효과적인 14가지 유형의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공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억 4,900만원(45.3%)이 감소한 17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산출내역〉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32억원	17억 5,100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50,000천원 ○ 제도 홍보비: 50,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41,000천원 ○ 제도 홍보비: 41,000천원
□ 보상금(310-03) : 3,150,000천원 ○ 신고포상금: 3,150,000천원	□ 보상금(310-03) : 1,710,000천원 ○ 신고포상금: 1,710,000천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

-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2년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보상금제도로 처음 도입된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이 추가되면서¹⁸⁾ 현재는 총 14가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¹⁹⁾

18)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보상금제도 운영(2002),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운영(2005.4), 대규모유통업법상 위반행위가 포상금 지급기준으로 추가(2015.8.), 하도급법위반행위 추가(2016.12.),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추가(2017.10.), 가맹거래법·대리점법위반행위 추가(2018.7.),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 추가(2021.5.)

19) 모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신고·제보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됨. 또한,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조치수준,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에 따라 산정되고, 사건의 의결 또는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됨.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각 호, 방문판매법 제44조 제1항 각 호,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하도급법 제22조 제5항,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항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해당 신고 또는 제보의 입증에 필요한 증

〈14가지 행위 유형〉

①부당공동행위, ②사업자단체금지행위, ③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④부당지원행위,
 ⑤부당고객유인행위, ⑥사원판매행위, ⑦미등록다단계, ⑧사행적판매원확장금지,
 ⑨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⑩하도급법 위반행위, ⑪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⑫가맹거래법 위반행위, ⑬대리점법 위반행위, ⑭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런데, 최근 5년간의 신고포상금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예산액을 초과하여 집행되었으나 2024년도부터는 신고포상금의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신고포상금 집행 실적(2025년 9월말 기준)〉

(단위: 건수,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급 실적(합계)	지급건수	31	43	67	37	10
	지급액	2,353,500	3,157,982	3,361,515	1,414,595	1,153,565
	예산액	2,130,000	3,130,000	3,350,000	3,000,000	3,150,000
부당한 공동 행위	지급건수	6	9	17	14	4
	지급액	2,186,000	2,486,220	3,214,290	897,757	1,142,635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지급건수	4	3	17	5	2
	지급액	7,200	892	75,385	2,550	4,730
신문판매고시 위반 행위	지급건수	2	2	2	-	-
	지급액	650	300	300	-	-
부당한 지원 행위	지급건수	2	2	-	1	-
	지급액	148,300	573,700	-	470,450	-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지급건수	1	1	2	-	1
	지급액	400	6,120	20,270	-	800
사원판매 행위	지급건수	-	-	2	-	-
	지급액	-	-	1,900	-	-
미등록다단계	지급건수	1	-	1	-	-
	지급액	1,000	-	250	-	-
사행적판매원	지급건수	-	-	-	-	-

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 등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의 결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된 사건의 의결 또는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확장금지	지급액	-	-	-	-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지급건수	-	1	1	1	-
	지급액	-	51,955	31,760	17,238	-
하도급법 위반행위	지급건수	-	-	-	-	1
	지급액	-	-	-	-	4,000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지급건수	-	-	-	-	-
	지급액	-	-	-	-	-
가맹거래법 위반행위	지급건수	15	24	22	13	2
	지급액	9,950	38,295	7,600	24,300	1,400
대리점법 위반행위	지급건수	-	1	3	2	-
	지급액	-	500	9,760	700	-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행위	지급건수	-	-	-	1	-
	지급액	-	-	-	1,600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특히, 3년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전체 포상금 지급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신고포상금 지급의 대부분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집중되어 있음.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지급액	2,353,500	3,157,982	3,361,515	1,414,595	1,153,565
부당한 공동행위 지급액(비중)	2,186,000 (92.9%)	2,486,220 (78.7%)	3,214,290 (95.6%)	897,757 (63.5%)	1,142,635 (99.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포상금 지급 규모도 크게 산정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법 위반행위의 경우, 신고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24년부터 감소하고 있음.

〈포상금 대상 행위 유형의 신고 사건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공정 거래법	경제력집중억제	4	5	8	2	1
	부당한 공동행위	94	96	62	117	70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43	68	36	32	22
	불공정거래 행위	104	102	101	105	91
방문판매법		16	16	17	18	15
하도급법		413	449	518	622	375
가맹사업법		139	179	153	131	92
대리점법		18	16	18	13	20
대규모유통업법		8	8	2	13	6
부당한 공동행위 제외한 타 유형의 합계		745	843	853	936	622

* 공정거래법 행위 유형 중 신고포상금 미지급 대상 행위는 제외함

** 2021~2024년: 통계연보 기준, 2025.9월은 잠정수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외한 타 유형의 신고포상금 집행 실적〉

(단위: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건수	25	34	50	23	6
지급액	167,500	671,762	147,225	516,838	10,93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법에서 명시한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등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신고가 접수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 그런데, 지급 제외 대상을 규정한 법령을 살펴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측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까지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타 법령에 비하여 제외 대상의 범위가 넓음.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 관련 규정〉

구분	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포상금의 지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u>신고자 또는 제보자가 그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u>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u>그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및 그 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제외한다.</u>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법 위반행위(이하 이 조에서 “법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u> 1. 해당 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2. 삭제 3. <u>해당 법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u> 4. 삭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u>해당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가맹본부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제외한다.</u>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포상금의 지급) ② 포상금은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u>해당 위반행위를 한 공급업자 및 그 공급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제외한다.</u>
대규모유통업에서 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포상금의 지급) ② 포상금은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u>해당 위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 및 그 대규모유통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제외한다.</u>

□ 신고포상금 제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하여 관련자 등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하면, 최근의 저조한 실적은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적극적인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먼저, 포상금 지급 실적이 저조한 위반행위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안내를 강화하는 등 신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²⁰⁾

○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하도급 분야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있음.

○ 참고로, 국회도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신고포상금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²¹⁾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외의 다른 유형에 대한 신고포상금 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홍보보다는 직장인 사용 빈도가 높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에 집중하고, 카르텔 업무 설명회 등 전문교육 시 신고포상금 제도를 안내하여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21) 정부위원회 결산 시정요구사항(2025년 8월 26일)

- 공정거래위원회는 적극적인 불공정행위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포상금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대규모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충원 등 사건 조사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할 것(제도개선)

7.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구축되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스템의 운영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은 가맹·유통·대리점분야의 거래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5,100만원(23.4%) 감소한 11억 5,0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978	1,501	1,150	△ 351	△ 23.4
· 가맹·유통·대리점분야 거래행태개선	672	1,192	853	△ 339	△ 28.4
· 대리점분야 환경개선	303	305	255	△ 50	△ 16.4
· 해외상생협력사례조사	4	4	-	△ 4	순감
· 가맹·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	-	43	43	순증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

2) 검토의견

- ☐ “가맹·유통·대리점분야 거래행태개선” 내역사업 예산안으로 편성된 8억 5,300만원 중 ‘가맹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연결’을 위한 예산으로 1억 2,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가맹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연결 사업의 편성 내역〉

- 공공요금 및 제세: 2,300만원(전용회선비)
- 공사비: 600만원
- 자산취득비: 9,200만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통요구자료 II-1)

- ☐ 가맹정보시스템은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8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구축된 시스템임.

- 이후 정보공개서의 등록·심사업무는 2012년 「가맹사업법」의 개정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위탁됨.²²⁾²³⁾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

23) 2018년 「가맹사업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25년 10월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4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그런데,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위탁된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를 수행할 때 임시로 방화벽을 해제하여 원격으로 업무망에 접속하고, 문서 작업 시에도 DRM²⁴⁾(디지털 저작권 관리, Digital Rights Management)을 일률적으로 해제하는 등 보안에 취약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가맹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연결’ 사업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신망을 연결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보안 위험 없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접근방식은 기존 GVPN²⁵⁾(정부원격근무서비스, Government Virtual Private Network)으로 우회하여 가맹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하던 형태에서 PC로 직접 접속하는 형태로 변경될 예정임.

□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시스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스템’ 또한 가맹정보시스템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운영 시스템 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용 시스템 현황〉

구분	운영	사용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	공정위	(업무망) 공정위, <u>조정원</u> , 지자체(서울·부산·인천·경기) (외부망) 가맹본부 등 대민 공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 시스템	공정위	<u>조정원</u> , 피평가 기업, 평가위원, 대민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4) 개별 파일을 암호화해 권한 없는 사용자가 열람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는 서비스

25) 행정전자서명(GPKI), 모바일공무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 등 행정기관 소속직원이 국·내외 출장지, 자택 등 인터넷이 연결된 공간에서 행정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스템 접속 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정보시스템과 마찬가지로 GVPN을 통하여 시스템에 접속하고 있으므로, 가맹정보시스템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하여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가맹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연결’ 사업으로 구축되는 정보통신망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스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연결’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정보통신망을 가맹정보시스템뿐만 아니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스템에도 활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산하기관 사이의 보안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8.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선진소비자정책 추진”은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날 행사 개최, 소비자정책 연구용역, SNS 부당광고 상시모니터링, 표준약관 교육, 소비자중심경영(CCM) 활성화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3,900만원(△18.9%) 감액된 14억 5,3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예산안은 소비자정책 추진 및 추진실적 평가 강화에 따라 2억 7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고,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사업이 2026년 1월 22일 구축 완료 예정으로 구축비 6억 6,000만원이 감액되고, 운영비 2억 5,900만원이 반영됨에 따라 4억 100만원이 감액 되었음.

〈2026년도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B-A)/ A
		본 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선진소비자 정책 추진	1,389	1,792	1,792	1,453	1,453	△339	△18.9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4	2025(2025. 7.)						2026 예산안
	집행액 [실집 행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337	1,792	1,792	1,792	567	196	-	1,453
· 소비자의날 행사	43	83	83	83	3	-	-	43
· 소비자정책 종합세미나	11	11	11	11	10	-	-	18
· 소비자정책사업 운영지원	37	41	41	41	20	-	-	45
· 특수·전자거래 인식개선	40	40	40	40	30	-	-	20
· 소비자중심경영 활성화	150	150	150	150	3	-	-	150
· 소비자정책 연구용역	154	40	40	40	20	-	-	40
· 표준약관 교육	11	11	11	11	7	-	-	11
·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25	29	29	29	7	-	-	29
· 소비자정책 추진 및 추진실적 평가	161	181	181	181	12	-	-	388
· 전자상거래분야 거래환경개선	47	50	50	50	20	-	-	50
·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92	-	-	-	-	-	-	-
· 중점대응과제 직권조사	60	61	61	61	41	-	-	55
· 광고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자문 및 의견수렴	25	25	25	25	10	-	-	25
· 소비자 법집행 감시요원 운영	40	40	40	40	-	-	-	-
· SNS 부당광고 상시모니터링	189	189	189	189	94	-	-	189
· 소비자 위해제품 감시 및 시정	50	56	56	56	35	-	-	56
·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153	76	76	76	38	-	-	54
· 소비자관련 법률 교 육콘텐츠 제작	38	40	40	40	-	-	-	11
· 후원방문판매업자 주 요정보 공개 데이터 분석 고도화	9	9	9	9	1	-	-	9
· 선불식 할부거래 통 합정보 플랫폼 구축	-	660	660	660	457	196	-	259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검토의견

(1)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회의개최 주기에 따른 감액필요

□ 내역사업인 소비자정책 국제협력은 ICPHSO²⁶⁾, OECD 소비자제품 안전작업반²⁷⁾, UNCTAD 전자상거래 주간 회의²⁸⁾ 등의 국제회의 참가, 아시아 소비자정책포럼 또는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200만원 감액된 5,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2025(2025. 7.)						2026 예산안
	집행액 [실집행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 예산	추경					
·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153	76	76	76	38	-	-	54
- 일반수용비 (210-01)	1	1	1	1	1	-	-	1
- 일반용역비 (210-14)	32	50	50	50	-	-	-	32
- 국외업무여비 (220-02)	89	22	22	22	-	-	-	20
- 사업추진비 (240-01)	1	3	3	3	-	-	-	1
- 국제부담금 (340-02)	30	-	-	-	-	-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6) ICPHSO(International Consumer Product Health & Safety Organization): 1993년에 설립된 보건 및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국제포럼

27)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산하에 설치된 국제 소비자 제품 안전 정책 및 규제 강화에 협력하는 국제기구

28)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주최하는 연례 행사로, 개발도상국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법규, 규제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

- 소비자정책 국제협력사업의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에 아시아 소비자정책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4,200만원을 편성함.

〈2026년도 예산안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산출내역서〉

(단위: 백만원)

-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54
- 국제회의 등록비²⁹⁾ : $0.9 \times 1 \text{명} = 0.9$
- OECD 소비자제품 안전작업반 참여:
 $3.9 \times 1 \text{회} \times 2 \text{명} = 7.8$
- UNCTAD 정례회의 : $3.9 \times 1 \text{명} \times 1 \text{회} = 4$
- 아시아 소비자정책포럼 개최 : $42 \times 1 \text{회} = 42$
- 국외여비: 9
- 일반용역비: $32 \times 1 \text{식} = 32$
- 사업추진비: 1

(자료: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 자료 재구성)

- 그러나, 아시아 소비자정책포럼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간 소비자정책 협력 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주기로 주최하는 소비자정책 당국자 간의 국제회의로, 2025년 9월에 AI 데이터 경제에서의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주제로 개최하였고, 다음 회의는 2027년에 있을 예정임.

29) 국제회의(ICPHSO*) 참가를 위한 등록비용

〈최근 5년간 아시아 소비자정책포럼 개최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일자	장소	예산 및 집행액	참석자	주제
2021	9.28.	엘타워	37	공정위 부위원장, 한국소비자원장, 소 비자정책당국 및 국제기구 등	디지털 플랫폼과 소비자 보호, 온라인 위해제품과 소비자 안전 등 논의
2023	9.8.	엘타워	32	공정위 사무처장, 한국소비자원 부원 장, 소비자정책당국 및 국제기구 등	디지털 경제에서의 소비자 이슈 및 협력방안 등 논의
2025	9.11.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	50	공정위 부위원장, 한국소비자원장, 소비자정책당국 및 국제기구 등	AI 데이터 경제에서의 소 비자 보호 방안 등 논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 소비자정책포럼으로 편성된 예산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개최될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국장급 회의체)³⁰⁾
에 한국대표로 3인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30)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는 2004년에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하였고, 소비자정책 관련 정보교환 및 협력증진을 위해 3국간 MOU를 체결(2006.11.)함. MOU에 따르면, 통상 격년마다 한국→중국→일본 순으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는 2024년에 한국에서 개최하였으므로, 2026년 중국, 2028년 일본, 2030년 한국에서 개최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10년간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 개최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일자	개최국	집행액	참석자(인원)	주제
2016	7. 7. ~ 8.	한국	42	(한국) 공정위(3) (중국) SAMR ³¹⁾ (2), CCA ³²⁾ (2) (일본) CAA ³³⁾ (5), NCAC ³⁴⁾ (2) ※ 국내 학계 및 소비자단체 100여명	· 3국간 소비자정책 및 최근 현황 정보교류 · 3국간 소비자피해 발생 정보의 공유수준 및 방법 등
2019	12. 11. ~ 13.	중국	3	(한국) 공정위(3), (중국) SAMR(1), CCA(6) (일본) CAA(1), NCAC(6)	· 초국경 거래에서의 소비자분쟁 해결방안 ·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방안 등
2021	12. 6.	일본 (온라인)	-35)	(한국) 공정위(2), (중국) SAMR(2), CCA(1) (일본) CAA(4), NCAC(1)	· 코로나시대의 소비자 정책 동향 및 이슈 · 국경간 법 집행 협력 과 소비자 분쟁해결 등
2024	9. 4.	한국	38	(한국) 공정위(3), (중국) SAMR(2), CCA(1) (일본) CAA(6), NCAC(2) ※ 국내 학계 및 소비자단체 80여명	· 한중일 소비자정책 공유 및 협력 방안 · 한중일 소비시장 트 렌드 및 국경 간 협 력 등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31)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32) 중국소비자협회(China Consumers Association)

33) 소비자청(Consumer Affairs Agency)

34) 일본국민생활센터(National Consumer Affairs Center of Japan)

35) 코로나19로 상황으로 인해 일본이 온라인회의(Zoom)으로 주최함.

- 2026년도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에 한국대표 3인이 참석하기 위한 필요예산은 국외여비 6백만원임.

〈2026년도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 참가 관련 필요예산 내역〉

항목	산출근거	소요예산
국외업무여비	· 항공운임: (900천 원×2인)+(1,800천 원×1인): 3,600천 원 · 일비: (30\$×3일×2명)+(35\$×3일×1명): 285\$ · 식비: (44\$×3일×2명)+(58\$×3일×1명): 438\$ · 숙박비: (106\$×2박×2명)+(130\$×2박×1명): 684\$	6백만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따라서, 2026년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예산안 5,400만원은 3,500만원 (일반용역비 3,200만원, 국외여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1,900만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예산안 수정의견〉

2026년도 예산안		수정의견	
·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54	·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19
- 일반수용비(210-01)	1	- 일반수용비(210-01)	1
- 일반용역비(210-14)	32	- 일반용역비(210-14)	-
- 국외업무여비(220-02)	20	- 국외업무여비(220-02)	17
- 사업추진비(240-01)	1	- 사업추진비(240-01)	1

- 또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회의 개최 주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표기하고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 소비자정책 추진 및 추진실적 평가 수당 과다편성 등

□ 내역사업인 소비자정책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는 「소비자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³⁶⁾에 따라 각 부처·지자체가 매년 수립하는 ‘연도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우수 사례에 대해 포상하는 등 소비자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환류하는 사업임. 2026년 예산안은 평가위원회 평가수당 현실화 및 대면평가 강화 등에 따라 전년대비 2억 700만원이 증액된 3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음.

36) 「소비자기본법」 제2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소관 업무에 관하여 다음 연도의 소비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시·도별시행계획(이하 “시·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 및 시·도별시행계획을 취합·조정하여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도별시행계획(이하 “시·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난해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나 시·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결과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2026년도 소비자정책 추진 및 추진실적 평가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2025(2025. 7.)						2026 예산안
	집행액 [실집 행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소지바정책 추진 및 추진실적 평가	181	181	181	181	12	-	-	388
- 일반수용비 (210-01)	88	88	88	88	6	-	-	215
- 임차료 (210-07)	-	-	-	-	-	-	-	15
- 일반용역비 (210-14)	20	40	40	40	-	-	-	80
- 사업추진비 (240-01)	3	3	3	3	3	-	-	3
- 포상금 (310-03)	50	50	50	50	-	-	-	7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마다 소비자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에서 제출한 시행계획을 취합·조정하여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음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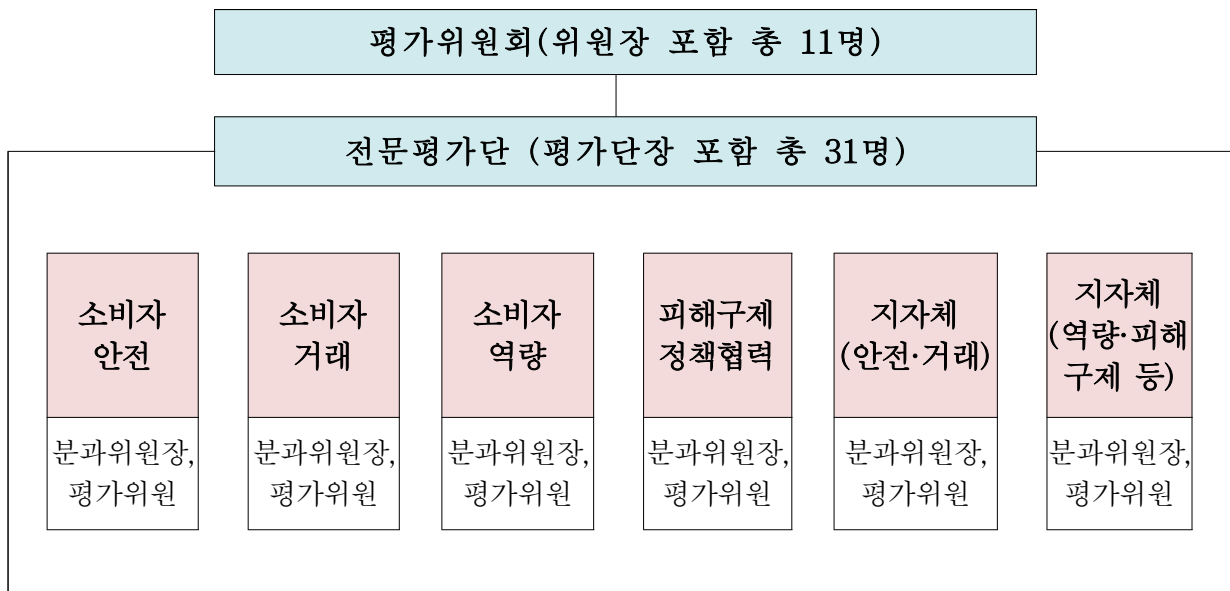
□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절차와 일정을 총괄하고 평가 결과를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한 평가위원회와 평가대상기관이 제출한 과제별 자체평가보고서(추진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서면평가를 실시하는

37) 18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지자체가 제출한 155개 과제에 대해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4 ~ 2026)」에 따른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을 2025년에 평가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공표한 바 있음.

전문평가단을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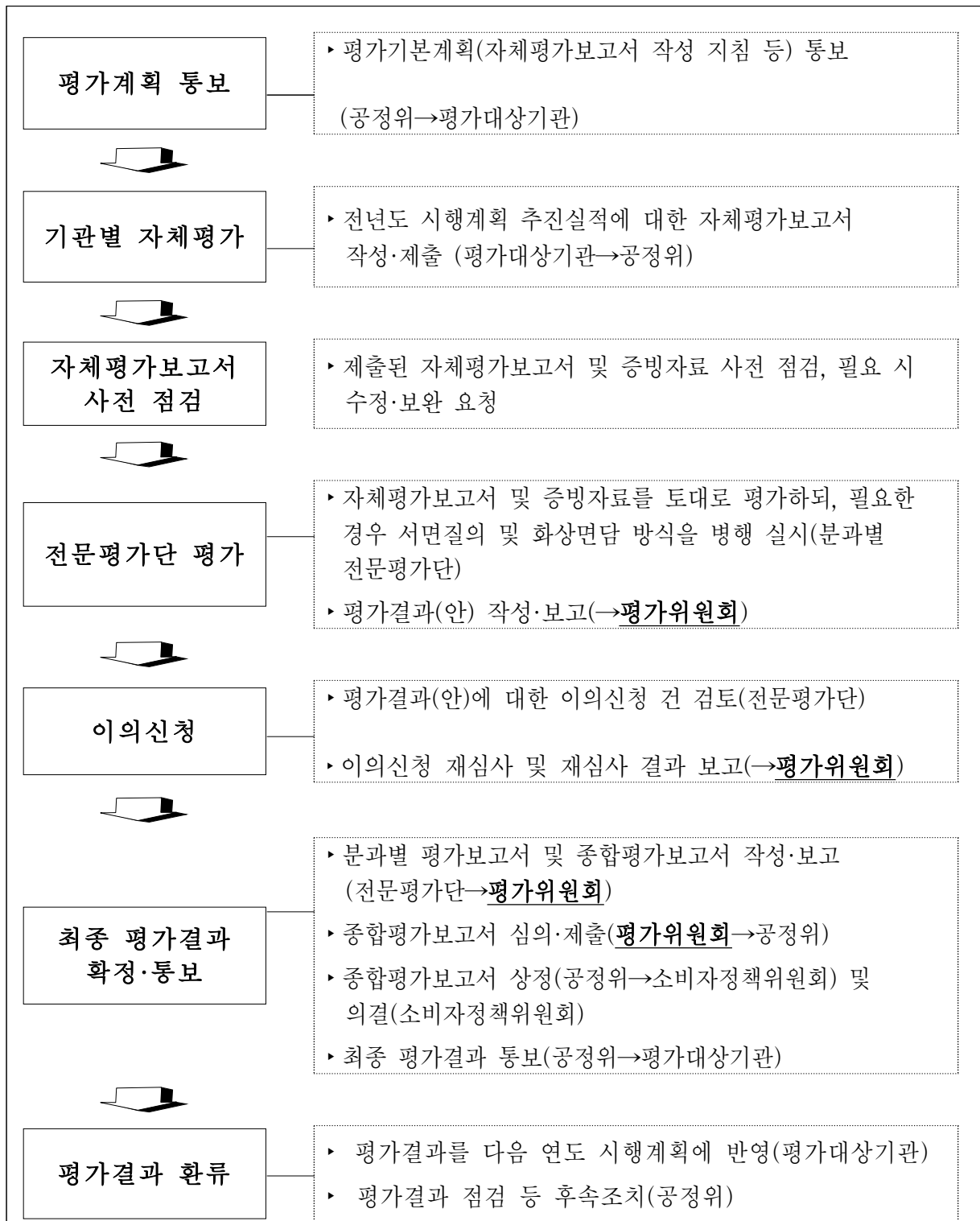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전문평가단장, 각 분과위원장, 정부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고, 전문평가단은 6개 분과 총 31명(평가단장 포함, 각 분과별 5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됨.

〈평가체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평가세부 주요 절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이러한 소비자정책 추진 및 추진실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에 평가위원 및 전문평가단의 의의제기 재심사 수당 500만원, 대면(화상) 평가 수당 3,100만원, 평가내용 컨설팅 1,250만원, 평가회의 참석수당(전문평가단) 3,1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7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소비자정책 추진 및 추진실적 평가 예산안 산출내역서〉

(단위: 백만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181	388
가. 평가위원 평가수당 지급	가. 평가위원 평가수당 지급
- 서면평가 수당: 190개*5명*0.05=47.5	- 서면평가 수당: 157개*5명*0.1=78.5
- 평가서 작성 수당: 190개*0.05=9.5	- 평가서 작성 수당: 157개*0.05=7.8
- 평가보고서 작성 수당: 7명*1=7	- 평가보고서 작성 수당: 7명*1=7
- <u>의의제기 재심사 수당: 35개*0.05=2</u>	- <u>의의제기 재심사 수당: 100개*0.05=5</u>
나. 평가위원회 회의 및 교육	나. 평가위원회 회의 및 교육
- 평가회의 참석수당(평가위원회): 8명*4회*0.12=4	- 평가회의 참석수당(평가위원회): 8명*3회*0.3=7.2
- 평가회의 참석수당(전문평가단): 31명*2회*0.2=12	- 평가회의 참석수당(전문평가단): 31명*5회*0.2=31
- 자료인쇄비, 회의비 등: 4회*1=4	- 자료인쇄비, 회의비 등: 6회*1.7=10.2
- <u>소비자정책 수립 및 평가 관련 연구개발: 4회*4=16</u>	- <u>소비자정책 수립 및 평가 관련 연구개발: 4회*8=32</u>
- 추진실적 평가회의 및 업무협약: 0.02*25명*2회=1	- 추진실적 평가회의 및 업무협약: 0.02*25명*2회=1
다. 우수사례 발표회 및 시상식	다. 우수사례 발표회 및 시상식
- 행사준비(자료 등): 1회*2=2	- 행사준비(자료 등): 2회*5=10
- 우수사례 발표회 참석자 오찬: 0.02*100명*1회=2	- 행사준비(자료 등): 2회*3=6
- 포상금: 10*5개사례 = 50	- 우수사례 발표회 참석자 오찬: 0.02*100명*1회=2
	- 우수사례집 및 기관장 인터뷰 홍보 책자 발간: 500부*0.03=15
	- 포상금: 5*15개사례 = 7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첫째, 2026년 예산안에 이의제기³⁸⁾ 재심사 건수를 100건을 설정하여 이의제기 재심사 수당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5년간 이의신청 제기 건수를 살펴보면, 최대 33건으로 최근 5년 평균은 15.8건에 불과하므로, 300만원 감액이 필요함.

〈2026년도 이의제기 재심사 수당 예산안 수정의견〉

(단위: 백만원)

예산안	수정의견
100개*0.05=5	33개*0.05=2

〈최근 5년간 이의제기 건수〉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이의제기 건수	33	18	19	2	7
재심사 결과	수용3건, 일부수용 6건, 불수용 24건	수용4건, 일부수용 2건, 불수용 12건	수용1건, 일부수용 10건, 불수용 8건	일부수용 2건	재심사 대상 없음*

* 2025년의 경우 이의신청 접수 신청서 검토 결과 재심사 대상 과제가 아니라 판단하여, 재심사를 진행하지 않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38) 자체평가결과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평가단의 평가의견에 결정적인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중대한 행정상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대상기관은 평가결과(안)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둘째, 2026년도 예산안에 전문평가단의 평가회의 횟수를 5회로 설정하여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5년간 전문평가단의 평가회의 개최 내역을 살펴보면, 전문평가단 워크숍(평가일정,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안내), 분과별 서면평가결과 검토, 이의신청 접수 검토 등을 위해 2회 ~ 3회를 개최하였다는 점에서, 1,240만원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026년도 전문평가단 평가회의 수당 예산안 수정의견〉

(단위: 백만원)

예산안	수정의견
31명*5회*0.2=31	31명*3회*0.2=18.6

〈최근 5년간 전문평가단 평가회의 개최 내역〉

연도	일시 및 방식	내역 및 참석자
2021년	2. 25. ~ 26. 화상회의	① 전문평가단 워크숍 - 평가일정,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안내 - 참석자: 2. 25. 10명, 2. 26. 9명
	4. 22. ~ 27. 대면회의	② 제1차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전문평가단 회의 - 분과별 서면평가결과 검토 - 참석자: 17명
	5. 18. 대면회의	③ 제2차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전문평가단 - 평가결과(안) 검토 및 확정 - 참석자: 7명
2022년	2. 24. ~ 25. 화상회의	① 전문평가단 워크숍 - 평가일정,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안내 - 참석자: 2. 24. 21명, 2. 25. 10명

연도	일시 및 방식	내역 및 참석자
	5. 12. ~ 13. 대면회의 토즈 수서점	② 제1차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전문평가단 회의 - 분과별 서면평가결과 검토 - 참석자: 1-5분과 21명, 6분과 5명 참석
	5. 24. 화상회의	③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전문평가단(추가) - 분과별 서면평가결과 검토 (6분과 추가 회의) - 참석자: 4명
2023년	2. 22. 대면회의 2. 28. 화상회의	① 전문평가단 워크숍(2.22. 수) - 평가일정,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안내 - 추가워크숍(화상, 2.28) - 참석자: 31명
	5. 9. ~ 10. 12. 대면/서울지원	② 제1차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전문평가단 회의 - 분과별 서면평가결과 검토 - 참석자: 1-5분과 19명, 6분과 5명 참석
2024년	2. 26, 2. 29. 대면회의	① 전문평가단 워크숍(2.26/29. 이비스명동 19층) - 평가일정,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안내 - 참석자: 26일 11명, 29일 15명
	5. 9. ~ 10. 대면/서울지원	② 제1차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전문평가단 회의 - 분과별 서면 평가결과 검토 - 참석자: 22명
2025년	2. 27., 3. 5. 대면회의 화상 병행	① 전문평가단 워크숍(2. 27. ~ 3. 5. 서울지원) - 평가일정,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안내 - 참석자 : 2. 27. 서울지원 대면 26명, 2. 28. 화상 4명, 3. 5. 서울지원 대면 1명
	5. 7. ~ 12. 대면/서울지원 화상 병행	② 제1차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전문평가단 회의 - 분과별 서면 평가결과 검토 - 참석자: 25명(대면 23명, 화상 2명)
	7. 16. ~ 18. 서면회의	③ 제2차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전문평가단 회의 - 이의신청 접수 검토내역 - 참석자: 11명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셋째, 소비자정책 기본계획(3년 단위) 수립과 관련한 연구, 소비자 정책 추진실적 평가 고도화를 위한 제도 개선, 평가운영, 세부평가 지표 개선 등에 대한 연구 등을 위해 소비자정책 수립 및 평가 관련 연구개발을 위해 일반용역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동 용역비를 활용하여 2022년부터 소비자정책 수립 및 추진 개선을 위해 실적이 부진한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정책컨설팅을 시행해 오고 있음³⁹⁾에도, 2026년도 예산안에는 평가내용 컨설팅 수당으로 5명의 전문평가단원이 5회의 컨설팅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1,250만원을 신규로 편성⁴⁰⁾하고 있음.

따라서, 소비자정책수립 및 평가 관련 연구개발비와 중복되므로, 일반용역비로 편성한 소비자정책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관련 연구개발비 8,000만원 중 1,250만원 감액이 필요함.

〈2026년도 소비자정책 수립 및 평가 관련 연구개발비 예산안 수정의견〉

(단위: 백만원)

예산안	수정의견
- 평가내용 컨설팅: 5명×0.5*5회=12.5 - <u>소비자정책 수립 및 평가 관련</u> <u>연구개발: 40*2회=80</u>	- 평가내용 컨설팅: 5명×0.5*5회=12.5 - <u>소비자정책 수립 및 평가 관련</u> <u>연구개발: 27.5*1회+40*1회=67.5</u>

39) (2022년도) 5개 지자체 → (2023년도) 6개 지자체 → (2024년도) 8개 지자체 → (2025년도) 7개 지자체

40)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에는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컨설팅을 중앙행정기관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최근 4년간 소비자정책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일반용역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잔액	비고
2022	40	40	20	20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지표 및 체계 개선방안 (5개 지자체 컨설팅 실시) (한국소비자원, 2022. 11. ~ 12.)
2023	40	20 ⁴¹⁾	20	-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 컨설팅용역 (6개 지자체 컨설팅 실시) (한국소비자원, 2023. 8. ~ 12.)
2024	40	40	20	20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연차별 시행 계획 추진실적 평가개선연구 (8개 지자체 컨설팅 실시) (한국소비자원, 2024. 5. ~ 12.)
2025	40	40	40 (집행예정)	-	2025년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 컨설팅 (7개 지자체 컨설팅 실시) (한국소비자원, 2025. 4. ~ 1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넷째,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표 및 체계 개선 방안’(2022),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 컨설팅 용역’(2023),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개선 연구’(2024)은 지식기반의 조사·연구 관련 용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일반용역비(210-14목)가 아닌 일반연구비(260-01목)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⁴²⁾.

41) 평가위원 수당 부족으로 2,000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목)로 세목 조정하여 집행하였음.

42)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일반용역비(210-14목)는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

□ 따라서, 소비자정책 추진 및 추진실적 평가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3억 8,800만원은 이의제기 재심사수당 300만원, 전문평가단 회의 참석수당 1,240만원, 소비자정책 수립 및 평가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일반용역비 1,250만원 등 총 2,790만원을 감액하여 3억 6,010만원으로 조정하고, 소비자정책 수립 및 평가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위해 편성된 일반용역비(210-14목)를 일반연구비(260-01목)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소비자정책 추진 및 추진실적 평가 예산안 수정의견〉

(단위: 백만원)

예산안		수정의견	
합 계	388	합 계	360.1
- 일반수용비(210-01)	215	- 일반수용비(210-01)	199.6
- 임차료(210-07)	15	- 임차료(210-07)	15
- 일반용역비(210-14)	80	- 일반용역비(210-14)	-
- 사업추진비(240-01)	3	- 사업추진비(240-01)	3
- 일반용역비(260-01)	-	- 일반연구비(260-01)	67.5
- 포상금(310-03)	75	- 포상금(310-03)	75

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 기반의 조사·연구 관련 용역은 일반연구비(260-01목)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3) 광고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자문 및 의견수렴 예산 비목 변경 필요

□ 내역사업인 광고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자문 및 의견수렴은 표시·광고 사건에서 사건처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인성 여부 및 정도를 공인된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조사 및 실증자료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위법성을 판단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게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광고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자문 및 의견수렴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2025(2025. 7.)						2026 예산안
	집행액 [실집 행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광고의 부당성 판 단을 위한 자문 및 의견수렴	25	25	25	25	10	-	-	25
- 일반수용비 (210-01)	25	25	25	25	10	-	-	2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2026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소비자 인식조사에 2,000만원, 실증자료 전문가 자문비 500만원으로 2,500만원 전액을 일반수용비 (210-01)로 편성하고 있음.

〈2026년도 광고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자문 및 의견수렴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 광고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자문 및 의견수렴: 25
 - 소비자 인식조사: 2회*10=20
 - 실증자료 전문가 자문 1회*5=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최근 5년간 소비자 인식조사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주류 영양성분 표시 관련 소비자 조사 용역을 (주)한국리서치 등 전문 설문조사 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수행하고 일반수용비(210-01) 비목으로 집행하고 있음.

연도	예산비목	집행금액	소비자 인식조사 내역	수행기관	계약기간
2021	210-01	11	「주류 영양성분 표시 관련 소비자 조사」 용역	(주)한국리서치	2021. 11. 24. ~ 12. 31.
	210-01	14	「법률서비스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용역	(주)한국리서치	2021. 11. 25. ~ 12. 31.
2022	210-01	14	e커머스 멤버십 광고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주)한국리서치	2022. 11. 25. ~ 12. 31.
	210-01	10	스마트폰 표시, 광고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주)한국리서치	2022. 11. 25. ~ 12. 31.
2023	210-01	10	라돈 저감 페인트 광고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주)한국리서치	2023. 10. 10. ~ 11. 8.
	210-01	9	광고대행사의 후기광고 건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주)한국리서치	2023. 10. 23. ~ 11. 23.
2024	210-01	10	온라인 유료구독 서비스의 상품 가격표시 방식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주)한국리서치	2024 1. 26. ~ 2. 29.
	210-01	3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주)마이크로엠브레인	2024 9. 30. ~ 10. 11.
	210-01	10	브랜드 로고 숫자 표시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주)한국리서치	2024 10. 15. ~ 11. 2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러나, 「20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수수료, 사용료 및
 전문가 자문료 등은 일반수용비(210-01)로 편성하고,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
 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은 일반용역비(210-14)
 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일반수용비(210-01), 일반용역비(210-14) 적용범위〉

□ 일반수용비(210-01)

-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비품 수선비 등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비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간행물 등 구입비,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등
- 회의참석사례금,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초빙강사료 등
- 소규모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수수료, 사용료 및 전문가 자문료 등

□ 일반용역비(210-14)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 민간위탁, 법정대행, 연구용역(정책개발 및 그 외 연구용역), 관리용역이 아닌 모든 업무의 대행을 위한 용역비
- 행사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대행함에 따른 제비용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따라서, 소비자 인식조사 용역은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수수료, 사용료 및 전문가 자문료 등이 아닌 설문용역으로 「20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4)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플랫폼 구축 감리용역 실시 등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 내역사업인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비자가 가입정보, 납입금액 등 계약 정보를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시장 현황·사업자 정보 등을 통합 공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동 플랫폼 구축이 2026년 1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구축비 6억 6,000만원이 감액되고 운영비 2억 5,900만원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4억 100만원이 감액된 2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	2025(2025. 10.)						2026 예산인
	집행액 [실집 행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	660	660	660	457	196	-	259
- 관리용역비 (210-15)	-	-	-	-	-	-	-	259
- 일반연구비 (260-01)	-	660	660	660	457	196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선불식 할부거래는 장례, 결혼 및 적립식 여행 등을 위하여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서비스 및 재화 등을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가입자 수 및 가입자가 미리 납부한 금액인 선수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선불식 할부거래업 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등록업체 수	84개	75개	73개	79개	78개
가입자 수	636만명	684만명	729만명	833만명	892만명
선수금	58,838억원	66,649억원	74,761억원	83,890억원	94,486억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러나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의 선수금 납입과 서비스 제공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여 소비자가 계약 내용 등을 기억하지 못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최근에는 업체 폐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연도별 폐업 상조업체 수>

(단위: 개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6.	합계
폐업업체 수	16	41	8	-	3	3	1	72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이에 동 사업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등록 사업자에 대한 종합적·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계약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해당 플랫폼 사용자별 주요 기능(안)〉

소비자	사업자	정부(공정위·지자체)
○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여부 확인 ○ 가입상품 계약정보 조회 ○ 상속인의 사망자 가입여부 조회 ○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 시장상황·사업자 관련 통계 조회	○ 경영·재무정보 제출·관리 ○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제출·관리 ○ 선수금 등 정보 제출·관리	○ 시장 현황·통계 관리 ○ 법 위반내역 관리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사업의 추진 경과는 2024년에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하였고, 2025년에 제한경쟁 방식으로 에스큐아이소프트(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음.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경과〉

(2025. 10. 기준,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계약액	집행액	계약자	계약방식	계약기간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ISP	200	114	114	(주)아던트	제한경쟁	2024. 3. 22. ~ 2024. 6. 20.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660	653	457 (선금)	에스큐아이 소프트 (주)	제한경쟁	2025. 6. 25. ~ 2026. 1. 2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한편, 행정기관등이 정보시스템 구축 시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따라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⁴³⁾은 행정기관등이 정보시스템 구축 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감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은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43)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시스템의 특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사업비(총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비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전자정부사업

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사업기간이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리 대상임에도 별도로 감리용역비를 2025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고, 제안요청서에도 감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표기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등 감리를 통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5년도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제안요청서 53p〉

○ 정보시스템 감리

- ① 감리를 적용하는 사업인 경우,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② 사업자는 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과업수행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통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호 사항은 감리(상주)의 검토의견을 받아 적용한 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보고(주/월간 보고 등), 비정기보고(착수, 단계별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기타 보고(이슈/위험 보고 및 조정 등)
 - 사업수행계획서, 구축계획서, 구축결과서
 - 통합대상 기관 요구사항 정의 및 검토결과 등 요구사항 관리 관련 산출물
 - 일정관리, 성과관리, 품질관리 관련 산출물
 - 검사 산출물 등 모든 산출물
 - 법·제도 관련 준수 등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44)”에 의거 하여 별도의 감리 절차는 진행 하지 않는다.

(자료: 나라장터)

□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플랫폼의 감리용역을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의 낙찰차액 670만원과 자체전용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감리용역 및 할부거

44)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은 행정안전부의 고시로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감리법인 등록,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감리원증 발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래법 개정⁴⁵⁾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플랫폼 구축 계약 기간⁴⁶⁾을 2026년 3월 ~ 4월로 연장한 후 기간 내 감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의 사업의 주요 기능은 소비자의 가입상품 계약정보 조회, 상속인의 사망자 가입여부 조회 등으로 소비자가 납부한 선수금 또는 예치금의 정보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계약 관련 정보 등이 필수적임.

□ 그러나 현행법은 제18조제6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증명 등의 정보,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및 제36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의 정보만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예산안 심의 시 동 정보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정보 수집·제공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⁴⁷⁾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미비한 상황임.

□ 따라서, 2026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의 통합 제공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동 플랫폼 구축 완료 전까지 감리용역을 실시하

45) 제22대 국회에서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과 관련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213446호, 제2213855호)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46)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계약 기간: 2025. 6. 25. ~ 2026. 1. 22.

47)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31p.

여 정보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보 수집·제공 및 운영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26년 예산안은 1월부터 운영하기 위해 12개월 운영비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므로, 4개월분의 운영비 8,600만원을 감액 하여 1억 7,300만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예산안 수정의견〉

(단위: 백만원)

예산안		수정의견	
합 계	259	합 계	173
- 관리용역비(210-15)	259	- 관리용역비(210-15)	173

9. 서울사무소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서울사무소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기관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00만원(6.4%) 증가한 2억 9,9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서울사무소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서울사무소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290	281	299	18	6.4
· 운영비	47	46	50	4	8.7
· 직무수행경비	243	235	249	14	6.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

2) 검토의견

□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고, 각 지방사무소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⁴⁸⁾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명칭	위치	관할구역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서울특별시·경기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⁴⁹⁾ 토대로 재작성)

48)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직무)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경쟁촉진·거래공정화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2. 위원회 소관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 및 상담
3.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시정
4.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 심사·관리
5.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불공정유통거래행위의 실태조사
6.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불공정유통거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9.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할부거래 및 특수판매 분야의 실태조사
1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2. 그 밖에 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9)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공정거래위원회

□ 이 중 서울사무소의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는 1,800만원이 증액⁵⁰⁾되었는데, 증액의 대부분은 특정업무경비의 현행화에 따른 것임.

○ 각 지방사무소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지속적으로 부정확하게 편성되어 매년 부족분이 발생하였고,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⁵¹⁾의 특정업무경비를 내역변경⁵²⁾하여 집행하였는데,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각 지방사무소의 특정업무경비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5년간의 집행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액한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서울사무소는 정원 대비 결원이 상당수 존재하는 상황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도 이러한 결원 상태를 전제로 편성된 것으로 보임.

〈서울사무소의 특정업무경비, 복리후생비 산출내역〉

구분	2026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비고
특정업무경비	2억 160만원	240,000원×12월×70명	
복리후생비	340만원	50,000원×70명	단수조정 (△10만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Ⅱ-1 토대로 재작성)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

50) 특근매식비 390만원, 복리후생비 100만원, 특정업무경비 1,310만원 증액

51) 코드: 일반회계 7011-200

52) 내역변경(조정)이란 단위사업내에서 동일목을 세부사업간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 396)

〈2021년~2025년 10월 기준 서울사무소 정원 및 현원〉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정원	85	83	82	82	83
현원	74	69	69.5	72.5	75.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최근 5년간 지방사무소별 민원접수건수와 사건처리건수를 살펴 보면, 전체 지방사무소의 업무가 2021년 14,906건에서 2024년 19,810건으로 4,904건(2021년 대비 32.9%) 증가하는 등 지방사무소의 업무량은 증가하는 추세임.

〈2021년~2025년 10월 기준, 지방사무소 민원접수건수 및 사건처리건수〉

(단위: 건)

소 관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서울	민원접수건수	9,573 (70.8%)	8,470 (68.4%)	10,246 (71.4%)	14,257 (76.8%)	7,380 (80.2%)
	사건처리건수	628 (45.2%)	575 (47.6%)	675 (47.8%)	637 (51.2%)	502 (55.7%)
부산	민원접수건수	1,250	1,175	1,319	1,509	641
	사건처리건수	188	250	291	223	164
광주	민원접수건수	934	1,098	1,065	936	389
	사건처리건수	202	132	172	160	99
대전	민원접수건수	953	858	917	934	325
	사건처리건수	218	136	127	109	67
대구	민원접수건수	806	774	812	929	467
	사건처리건수	154	116	147	116	69

* (): 당해 전체 지방사무소의 민원접수건수 및 사건처리건수 중 서울사무소가 차지하는 비중 표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특히, 서울사무소의 업무량은 같은 기간 4,693건 증가하여 전체 지방사무소 증가분의 약 95.7%를 차지하고 있음.

- 즉, 지방사무소 업무 증가의 대부분이 서울사무소에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사무소에 상당수의 결원이 존재하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음.

〈2021년~2025년 10월 기준 지방사무소 정원 및 현원〉

(단위: 명)

구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021년	85	74	26	22	21	20	19	16	18	15
2022년	83	69	27	27	21	20	18	17	18	16
2023년	82	69.5	26	24	21	18	18	17	18	18
2024년	82	72.5	26	26.5	20	18	18	18	18	17
2025년	83	75.5	26	26.5	19	17	18	18	18	1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10월 기준 지방사무소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정원	현원	조사인원		비고
			조사인원	비조사인원 ⁵³⁾	
서울	83	75.5	77	2.5	* 조사인원 중 4인은 현원에 포함되지 않음 (4인은 수습근무 중임).
부산	26	26.5	26	0.5	
광주	19	17	17	-	
대전	18	18	18	-	
대구	18	18	18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사무소의 규모가 타 지방사무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서 휴직·파견 등 일시적 인력 상황에 따라 정·현원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임.

53) 서울: 비서 1인, 운전직 1인, 기록물관리 임기제 0.5인
부산: 기록물관리 임기제 0.5인

□ 하지만, 수년간 결원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력 운용상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량,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를 바탕으로 한 정원의 조정이나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하여 가급적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예산도 이에 맞추어 편성할 필요가 있음.

10. 심판관리관실·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국외업무 여비의 집행 계획 철저 수립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와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는 각각 심판관리관실과 경쟁정책국의 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2026년 예산안은 각각 전년 대비 6,300만원(19.3%) 증가, 200만원(△0.5%) 감소한 3억 8,800만원, 3억 7,4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2개 부서의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 A
심판관리관실	549	325	388	63	19.3
경쟁정책국	378	376	374	△2	△0.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검토의견

- 심판관리관실과 경쟁정책국은 각각 부서의 비총액인건비성 기본 경비에 국제행사 참석 등을 위한 국외업무여비를 반영하고 있음.
- 심판관리관실의 2026년도 국외업무여비는 1,700만원으로 2025년과 동일한 금액이고, 경쟁정책국의 국외업무여비는 1억 2,800만원으로 2025년(1억 3,500만원) 대비 700만원이 감액되었음.
- 다른 부서와 달리 심판관리관실과 경쟁정책국은 예산 편성 시 계획 하였던 국외업무여비 집행과 실제 집행 내역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문제가 있음.
- 심판관리관실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ICN 참석 예산을 편성해 왔으나, 단 한 차례도 ICN 참석을 한 적이 없고, 경쟁정책국 역시 매년 한-중 경쟁정책협의회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실제 해당 행사는 집행하지 않음.
- 또한, 경쟁정책국은 매년 ICN 연차총회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출장 인원에 장관급 인력을 포함하는 등 직급을 상향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실제 집행시에는 장관급 인원이 참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음.
- 국제행사의 실시 및 참석 여부는 매년 변동 가능성이 있고, 예산 편성 시점에는 다음연도의 행사 참석 여부를 모두 예측하기 어렵다는 불가

피한 측면이 있으나, 매년 관행대로 예산을 편성한 후 계획과 다르게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편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11. 공정거래지원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공정거래지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의 홍보, 직원 역량 제고 등을 위한 사업으로, ‘공정거래정책알리기’,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청년인턴운영’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6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9,100만원(7.9%) 증가한 12억 4,8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공정거래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공정거래지원	1,294	1,157	1,248	91	7.9
· 공정거래정책알리기	546	548	654	106	19.3
·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154	158	142	△16	△10.1
·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299	116	116	-	-
·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69	71	64	△7	△9.9
· 청년인턴 운영	230	264	272	8	△3.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검토의견

(1) 공정거래정책알리기: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예산의 집행 방식 개선 필요

□ ‘공정거래정책알리기’ 내역사업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600만원 (19.3%) 증가한 6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중 1억 3,500만원을 뉴미디어 매체 홍보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그 대부분(8,000만원)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예산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약 8,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였는데, 대부분의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2024년 인플루언서 활용 콘텐츠 제작·홍보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콘텐츠명	인플루언서	예산			
		예산	집행	조회수	게시일
선넘은 거래(10편)	조수연 (코미디언)	15	15	23만	5~11월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이제 그만!(6편)	유튜브 서울신문	24.2	24.2	19.5만	3월
될성부른 프랜차이즈(4편)	홍석천	49.9	49.9	54만	11월
공정동행(6편)	MC 김우진			2만	12월
공정위 사용설명서(2편)	아나운서 정승조			0.2만	12월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 2025년에도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역시 대부분의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고 있음.

〈2025년 인플루언서 활용 콘텐츠 제작·홍보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콘텐츠명	인플루언서	예산			
		예산	집행	조회수	게시일
전국퀴즈자랑(6편)	MC 김우진	1.4	1.4	16.5만	9~11월
유튜브 숏드라마 ‘공정한 패밀리G’(총13편 2편 게재)	조지훈(감독)	26	20	10만	11~12월
웹툰 ‘공정거래위원회’ (총 8편 예정)	엄국수 (웹툰 작가)	7.5	3.0	-	11월 게재예정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 기관 또는 정책의 홍보를 연중 고르게 집행하지 아니하고 연말에 집중하여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연말에 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꺼번에 홍보 예산을 집중하여 집행할 경우 그 성과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봄.

(2)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민원·사건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및 환류 필요

- ☐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내역사업에서 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 파악, 민원행정서비스에서 나타난 문제 진단 등의 목적으로 매년 기관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만족도 조사는 외부고객(민원·사건 처리 만족도, 정책만족도)과 내부고객(만족도)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가장 최근의 만족도 조사 결과(2024년)에 따르면 민원·사건서비스 만족도 73.1점, 정책만족도 76.5점, 내부만족도 80.8점임.

□ 이 중 민원·사건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사건처리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친절성, 신속성, 적극성, 공정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데, 지방사무소 중 지속적으로 서울사무소, 부산사무소, 광주사무소의 결과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민원·사건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추이〉

연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2022	60.7	56.6	67.6	78.1	73.7
2023	61.5	63.7	68.8	66.1	68.2
2024	60.3	65.1	66.4	78.0	78.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사무소의 사건접수 및 처리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민원·사건서비스의 만족도가 낮다는 의견임.

○ 민원·사건서비스의 특성상 만족도 조사결과가 높게 형성되기 어렵고, 사건접수 및 처리 건수가 높을수록 신속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은 일면 타당성이 있음.

〈연도별 지방사무소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구분	2022년				2023				2024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신고	직권	계		신고	직권	계		신고	직권	계	
서울	494	84	578	575	491	217	708	675	498	107	605	637
부산	135	60	195	250	137	157	294	291	166	36	202	223
광주	89	50	139	132	111	74	185	172	131	24	155	160
대전	89	35	124	136	74	75	149	127	76	16	92	109
대구	84	22	106	116	68	77	145	147	66	45	111	116
계	891	251	1,142	1,209	881	600	1,481	1,412	937	228	1,165	1,24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다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사무소의 사건접수 및 처리 건수는 그 편차가 크지 않고, 업무량에 비례하여 직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만족도 조사를 주관한 컨설팅 회사의 결과보고서에서도 서울·부산·광주 사무소의 만족도 점수가 낮은 점을 지적하면서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안내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만큼 이들 사무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 및 평가 환류가 필요할 것으로 봄.

〈지방사무소별 직원 현황〉

구분	관할구역	직원수(명)	개소일
서울	서울, 경기, 인천, 강원	74	2005. 12. 19.
부산	부산, 울산, 경남	26	1990. 8. 2.
광주	광주, 전북, 전남, 제주	18	1990. 8. 1.
대전	대전, 세종, 충북, 충남	18	1990. 7. 31.
대구	대구, 경북	17	1992. 4. 2.

12.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심의에 필요한 문서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관리·송달·열람할 수 있는 ‘전자심의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 신규로 68억 4,2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	-	6,842	6,842	순증
·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	-	6,842	6,842	순증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검토의견

□ 국회는 행정비용의 절감, 효율적인 사건처리와 민원인의 행정 편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2024년 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를 신설⁵⁴⁾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과정에 전반에 전자정보처리조직을 도입하도록 하였고, 해당 조문은 전자정보처리조직의 구축 일정을 고려하여 2027년 2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7년 시행 예정인 해당 조문을 집행하기 위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본 사업을 편성하였음.

○ 세부적으로는 시스템 구축비 20억 1,000만원, 데이터베이스 분석 설계 및 마이그레이션 비용 6억 7,400만원,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

54) 제98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문서의 제출 및 송달) ① 당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하여 구축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등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결서 및 재결서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해당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후 그 등재 사실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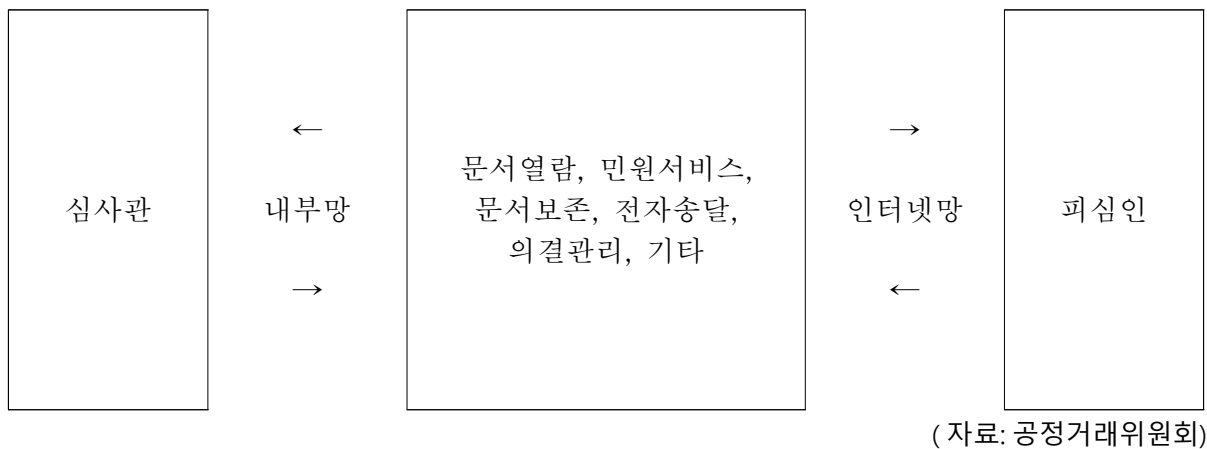
⑤ 제3항의 방법에 따른 문서의 송달은 당사자등이 제4항에 따라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였을 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 이내(의결서 및 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의결서 및 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⑥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장애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5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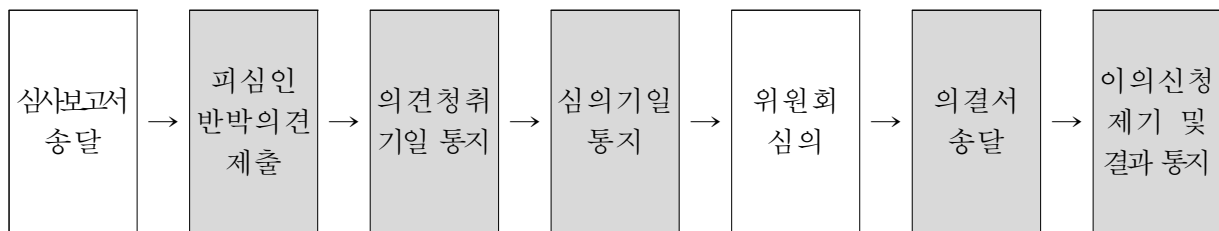
평가 비용 5억 5,400만원,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 35억 5,600만원, 조달수수료 4,800만원으로 구성됨.

- 전자심의시스템은 안건 상정부터 의결서 송달까지 생산·접수되는 모든 문서를 종이로 처리하여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심의를 받는 사업자도 관련 문서를 제출·관리·송달·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법원의 전자소송, 행정심판위원회의 전자행정심판, 특허심판원의 전자특허심판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구축될 예정임.

〈전자심의시스템의 주요 기능〉



〈심의·의결 업무절차와 전자시스템의 활용 예〉



※ 음영은 전자심의시스템 활용이 가능한 절차를 말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세부 구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심의업무의 디지털화와 검색기능의 고도화로서 피심인에게 심의 일정과 현황, 결과 등을 통합 제공하고 단계별로 필요한 문서 제출 및 송달 확인 등의 기능을 구현하며, 유사 심결례 검색 등 자료검색 서비스를 제공함.
- 둘째, 온라인 문서 송달을 통해 문서 수·발신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주요 전자문서에 전자서명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문서의 무결성·진본성 등을 확보함.
- 셋째, 심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중앙에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 넷째, 현재의 대민서비스 기능인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대민서비스를 통합 운영하여 이용자 편의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시스템 분석·설계·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 통합테스트를 거쳐 개정 법률의 시행일(2027년 2월)에 맞추어 운영을 시작할 예정임.

□ 본 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사업 착수의 지연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일정이 다소 촉박하므로 사업 착수가 늦어지면 개통 예정일(2027년 2월)로부터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통상 정보화 사업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유찰이나 설계 기간의 변동이 잦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1차 연도 구축사업의 착수가 1년(2024년 5월 → 2025년 5월)이나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2차연도 고도화 사업도 순연되면서 일반연구비 등 32억 3,600만원의 예산이 이월되어 지난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우리 위원회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은 바 있음.

대법원도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일정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면서 과업기간의 변경 및 집행률 저조에 관하여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요구를 받음.

- 다음으로, 목표 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시스템 본연의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의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의 경우 잦은 과업변경 및 계약금 증액 문제로 사업자와 분쟁을 겪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 사업도 당초 118개 행정심판기관의 통일된 적용을 목표로 하였으나, 28개

행정심판기관이 배제된 채 개통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도 말까지 사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시스템 구축부터 개통까지 사업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13. 한국소비자원 출연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국소비자원은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 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출연금으로 지원 받는 수지차보전기관으로, 2026년도 수입예산은 정부출연금, 자체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출예산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예비비로 편성됨.

□ 2026년도 수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33억 7,800만원(6%) 증가한 601억 1,800만원으로, 정부출연금 571억 4,600만원과 자체수입 29억 7,200만원으로 구성됨.

2026년도 지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33억 7,800만원(6%) 증가한 601억 1,800만원으로, 인건비 396억 1,300만원, 사업비 144억 4,800만원, 운영비 46억 2,300만원, 예비비 14억 3,400만원으로 구성됨.

□ 지출 예산안의 주요 증액요인은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 안전 사각지대 위해성 평가 및 시험평가 설비 고도화 사업비 증액 등임.

〈2026년도 한국소비자원 출연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 A
					A
□ 수 입	55,564	56,740	60,118	3,378	6.0
정부출연금	52,842	53,696	57,146	3,450	6.4
자체수입	2,722	3,044	2,972	△72	△2.4
□ 지 출	54,681	56,740	60,118	3,378	6.0
인건비	37,642	37,950	39,613	1,663	4.4
사업비	12,723	12,885	14,448	1,563	12.1
운영비	4,316	4,517	4,623	106	2.3
예비비	-	1,388	1,434	46	3.3

(자료: 한국소비자원 예산안 설명자료)

2) 검토의견

(1) 소비자안전 및 시험검사: 안전 사각지대 위해성 평가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소비자안전 및 시험검사는 위해정보를 수집·분석·처리하고, 제품·시설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건의, 신유형·신기술 및 국민 다 소비 제품의 품질·안전성을 시험평가 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소비자의 정보 대응력과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안전 사각지대 제품 위해성 평가 사업 신설 및 노후 시험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도입 사유로 전년 대비 10억 3,300만원(18.9%) 증액된 65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소비자안전 및 시험검사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B)		
▪ 소비자안전 및 시험검사	5,470	6,503	6,503	1,033	18.9
- 소비자안전	2,450	2,755	2,755	305	12.4
- 시험검사	3,020	728	728	728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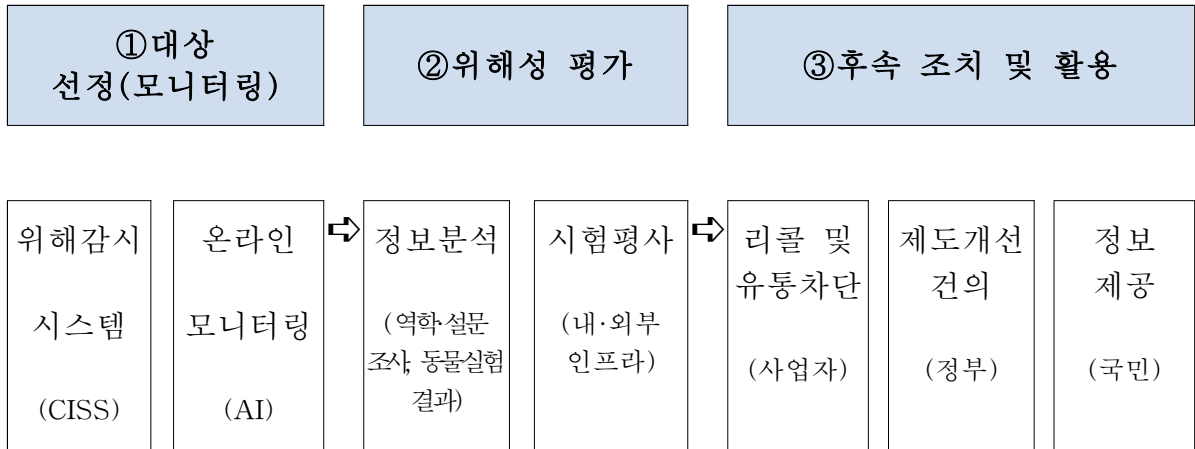
(자료: 한국소비자원 예산안 설명자료)

□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융복합 기술 발전, 신소재 개발 등으로 기존 법·제도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은 신유형·해외 제품 유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법·제도를 벗어난 비규제제품의 잠재적 위험성을 조기 발견하고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사각지대 위해성 평가사업을 신설하였음.

○ 위해감시시스템(CISS)⁵⁵⁾ 및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 역학·설문조사·동물실험 결과를 통한 정보분석 및 시험평가 등을 통해 위해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시정권고 및 제도 개선 건의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소비자·사업자·정부 등 주체별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⁵⁵⁾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약칭으로, 소비자기본법 제8조(위해의 방지),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위해정보제출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의거 전국의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등을 포함한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전화 국번없이 1372)를 통해 접수되는 소비자상담, 핫라인(080-900-3500), 국내외 언론 등으로부터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축된 소비자 위해상황 상시감시시스템

〈위해성 평가 절차(안)〉



(자료: 한국소비자원 예산안 설명자료)

□ 한국소비자원은 동 사업을 연 10회 실시할 계획으로, 단계별 시험평가를 위한 연구 시약 및 재료비, 외부 시험용역 의뢰 등의 내역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6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안전 사각지대 위해성 평가 예산안 산출내역〉

안전 사각지대 위해성 평가 : 635백만원(신규)

- 단계별 시험평가를 위한 연구 시약 및 재료비(420백만원)
 - 연구 시약 및 재료비 : 42백만원 × 10회 = 420백만원
 - 유해성 확인 : 12백만원 × 10회 = 120백만원
 - 시나리오 기반 분석법 개발 : 12백만원 × 10회 = 120백만원
 - 노출평가 : 18백만원 × 10회 = 180백만원
- 외부 시험용역 의뢰(90백만원)
 - 연구인력 인건비 : 18백만원 × 5회 = 90백만원
 - 책임연구원 : 3,706천원 × 6개월 × 참여율 50% × 5회 = 55백만원
 - 연구원 : 2,842천원 × 6개월 × 참여율 30% × 5회 = 25백만원
 - 연구보조원 : 1,900천원 × 6개월 × 참여율 20% × 5회 = 10백만원
 - * 2025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행안부) 적용
 - * 5회 기준으로, 자체시험 설비·인력을 활용한 내부 시험 불가 항목에 한해 의뢰

- 소비자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115백만원)
 - 설문조사 : 1,000명 × 10천원 × 10회 = 100백만원
 - 전문가 자문 : 5회 × 30천원 × 10회 = 15백만원
- 자료 구입 및 여비(10백만원)
 - 자료 구입 : 역학 조사 결과 등 각종 데이터 구입 500천원 × 10회 = 5백만원
 - 여비 : 자문·회의 참석, 현장조사 등 50천원 × 2명 × 5회 × 10회 = 5백만원

(자료: 한국소비자원 예산안 설명자료)

□ 현행 정부 부처의 제품 안전관리 체계는 개별 법령에 따른 특정 품목
군 중심의 사후적 규제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에 대한 제도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안전
사각지대 위해성 평가 도입은 안전 사각지대 제품으로 인한 잠재적 위
험을 조기에 발견·차단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소비자기본법」⁵⁶⁾ 및 「위해정보 및 결함정보 처리규정」(한

56) 「소비자기본법」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① (생략)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원장은
위해정보의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정보의 발령
2. 물품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3. 위해 물품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5. 그 밖에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 이행 결과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1. 시정 권고에 따른 이행 내용과 실적
2.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3. 위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④ 원장은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
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을 해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자는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국소비자원 내부규정)⁵⁷⁾에서 정하고 있는 위해정보 후속조치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는 강제성이 없는 등 위해성 평가결과에 따른 신속한 후속조치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한국소비자원장은 위해정보 분석결과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나 이행 대한 강제성이 없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할 수는 있으나 반영 의무가 없음.
-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의 비관리(비규제) 제품 시정권고 사업자 수락율은 2021년 57.7%에서 2025년 8월 현재 77.4%로 개선되고 있으나 5년간의 평균 수락율은 67.8%로 저조한 것으로 보임.

전까지 사업자명·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병원·학교·소비자단체 등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7) 「위해정보 및 결함정보 처리규정」

제11조(위해정보의 후속조치) ①위해정보 처리팀은 제10조에 의해 이관받은 위해정보건에 대하여 사실확인(필요시 시험검사 포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실시한다.

1. 사업자 시정권고 : 물품 등의 제조·유통·판매사업자에게 1)리콜권고, 2)안전기준 준수 권고, 3)품질·시설·표시개선 권고
2. 시정조치 건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1)리콜건의, 2)단속건의, 3)기타 조치건의
3. 제도개선 건의 : 중앙행정기관에 1)안전기준, 법령 제·개정 건의, 2)안전관리방안 마련 건의
4. 소비자정보제공 : 인터넷, 언론매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5. 기타

②제10조제2항의 위해정보에 대하여 위해정보평가실무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위해정보건은 위해정보 처리팀으로 이관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처리토록 한다.

③ 제1항제5호의 경우, 위해정보 처리팀은 해당 위해정보의 처리결과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그 처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위해정보평가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비관리 제품 시정권고 사업자 수락율〉

(단위: 건, %)

연 도	시정권고 (C=A+B)	수락			불수락 (B)	수락율 (A/C*100)
		이행	이행계획 미제출	소계(A)		
2021	130	75	-	75	55	57.7
2022	138	84	-	84	54	60.9
2023	152	108	-	108	44	71.1
2024	182	130	-	130	52	71.4
2025. 8.	115	89	-	89	26	77.4
계	717	486	-	486	231	67.8

※ 이행계획 미제출 시 불수락으로 간주

(자료: 한국소비자원)

-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의 국가·지자체에 대한 시정조치·제도개선 권고 반영률에 따르면, 2021년 58.8%에서 2025년 8월 현재 75%로 개선되고 있으나 5년간의 평균 수락율은 52.9%로 저조함.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국가·지자체에 시정조치·제도개선 권고 반영률〉

(단위: 건, %)

연 도	건의 (C=A+B)	반 영			미반영 (B)	반영률 (A/C*100)
		전부반영	일부반영	소계(A)		
2021	34	9	11	20	14	58.8
2022	32	17	2	19	13	59.4
2023	26	6	1	7	19	26.9
2024	21	7	5	12	9	57.1
2025. 8.	8	6	-	6	2	75.0
계	121	45	19	64	57	52.9

(자료: 한국소비자원)

- 또한, 한국소비자원장은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⁵⁸⁾을 건의할 수 있으나, 최근 5년간 이러한 시정요청 건의가 전무함.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위해발생 우려 시 후속조치 현황〉

(단위: 건)

연 도	위해정보 분석건수*	소비자 안전경보 발령**	사실의 공표	사업자 시정 권고	국가· 지자체 시정조치· 제도개선 건의	공정위에 제46조제1 항에 따른 시정요청 건의
2021	269,466	10	46	582	34	-
2022	420,442	16	44	772	32	-
2023	394,214	14	43	635	26	-
2024	480,818	10	43	794	21	-
2025. 8.	372,070	7	27	628	8	-
합 계	1,937,010	57	203	3,411	121	-

* 후속조치 등에 활용된 위해정보 건수의 합계(중복 건 존재)

** 소비자안전주의보⁵⁹⁾ 발령 실적(해당 기간내 소비자안전경보 발령 실적은 없음)

(자료: 한국소비자원)

58)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거·파기 등의 권고, 명령, 과태료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신속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소비자기본법」

제46조(시정요청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수거·파기 등의 권고
 - 나.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수거·파기 등의 명령
 - 다. 제8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3. 그 밖에 물품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②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신속히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9) 「위해정보 및 결함정보 업무처리규정」(한국소비자원 내부규정)제22조의2에 따라 소비자안전경보 발령 요건(동일한 물품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유형의 위해정보가 1개월 이내에 10건 이상 접수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 위해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론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함.

□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안전 사각지대 위해성 평가를 통해 제품 등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사업자의 시정권고 수락을, 국가·지자체에 대한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반영률 등을 제고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에 시정요청 건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분쟁조정의 사건적체 및 사건 처리
신속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사업’은 소비자가 소비생활에서 겪는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합의·조정하여 신속한 피해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00만원(△1.3%)이 감액된 18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B)		
▪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1,905	1,881	1,881	△24	△1.3
- 피해구제	861	961	961	100	11.6
- 분쟁조정	751	677	677	△74	△9.9
- 지방소비자	293	243	243	△50	△17.1

(자료: 한국소비자원 예산안 설명자료)

-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 제60조⁶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

60) 「소비자기본법」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2. 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400만원
감액된 6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분쟁조정의 사건적체 해소를 위한 신속
조정부 확대 운영을 사유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분쟁조정 예산안 산출내역서〉

-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325백만원
 - 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운영, ② 분쟁조정제도 프로세스 개선, ③ 의료 분쟁조
정회의 운영, ④ 집단분쟁조정 활성화, ⑤ 조정제도 홍보, ⑥ 교육 등 역량 강화
(6개 사업×54.2백만원)
- 분쟁조정 사건적체 해소를 위한 신속조정부 운영 280백만원
 - 비상임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전 합의권고 기능 활성화 및 사건처리 신
속성 확보(2,800건×100천원)
- 온라인 분쟁조정 회의 환경 구축 72백만원(신규)
 - 모바일·PC를 활용한 조정위원·당사자의 회의 참석 인프라 구축(2식×36백만원)

(자료: 한국소비자원 예산안 설명자료)

- 최근 3년간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4,118건(2022년)→6,390건(2023년)→
9,731건(2024년)으로 2024년에는 2022년 대비 5,613건(136.3%) 증가함
에 따라, 처리건수가 5,065건(2022년)→5,180(2023년)→6,969(2024년)으
로 2024년에는 2022년 대비 1,904건(37.6%)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해결 건수는 1,558건(2022년)→2,768건(2023년)→5,530건(2024년)
으로 2024년에 2022년 대비 3,972건(255%) 증가하였음.

〈최근 3년간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일)

구분	2022	2023	2024	2025. 8.
신청(A)	4,118	6,390	9,731	8,347
전년도 미결(B)	2,505	1,558	2,768	5,530
처리 대상(C=A+B)	6,623	7,948	12,499	13,873
처리(D)	5,065	5,180	6,969	5,827
처리율(D/A*100)	76.5	65.2	55.8	42.0
성립률	70.5	67.6	70.7	70.9

(자료: 한국소비자원)

□ 이러한 소비자분쟁조정 사건 폭증에 따른 미결·적체 사건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⁶¹⁾에 따라 조정회의 상정 이전에 소비자 분쟁해결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비상임위원⁶²⁾을 사전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사실조사 및 법률검토 등을 수행하게 하여 원만한 합의권고를 유도하는 신속조정부를 2022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음.

6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4조(조정위원장의 합의권고) 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분쟁조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보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분쟁조정 규칙」

제16조(위원장의 합의권고)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합의권고의 결과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합의된 내용대로 조정결정 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경우 위원장은 합의이행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62) 「소비자기본법」 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분야별 비상임위원 구성 현황〉

(2025. 8. 기준, 단위: 명)

분야	신분	인원
소비자대표	민간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28
사업자대표	사업자 협회 관계자 등	28
법조계	변호사 등	30
전문분야	의료, 금융·보험, 식품, 정보통신, 자동차, 여행, 약관광고, 가전, 건축 및 기타 소비자 문제 해결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관련 분야 전문), 의사, 대학 교수, 관련 공공기관·협회 전·현직 임직원 등	59
합계	-	145

(자료: 한국소비자원)

□ 최근 3년간 신속조정부 예산집행내역 및 사건처리 건수에 따르면, 2024년은 1,661건을 처리하여, 신속조정부를 운영하기 시작한 2022년 812건 대비 2배 증가하였음.

〈최근 3년간 신속조정부 예산집행내역 및 사건처리 건수〉

(단위: 백만원, 건)

구분		2022	2023	2024	2025. 7.
예산	당초	36	66	80	80
	수정	41	66	153	118
집행		40	51	153	118
처리 건수	조정결정*	655	413	1,168	714
	합의이행	85	49	162	110
	기타**	72	48	331	252
	합 계	812	510	1,661	1,076

* '성립', '불성립', '기각', '성립기간중'인 사건

** 신청취하, 각하(불개시) 등

(자료: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비상임위원 145인 중 사전조정위원 활동이 가능한 20명~30명을 활용해 연간 신속조정 사건 규모를 현행 800여 건⁶³⁾에서 2,800건 수준으로 확대하여 향후 5년 내 적체사건 해소를 600여 건으로 축소할 계획임.

〈신속조정부 운영 확대에 따른 적체사건 해소 시나리오〉

(단위: 건, 명)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접수 건(A)*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전년 미결 건(B)	5,526	7,706	7,106	5,726	3,566
처리 대상 건(C=A+B)	15,526	17,706	17,106	15,726	13,566
자체 처리 건(D=a×b)	7,020	7,800	8,580	9,360	10,140
처리 인력(a)**	36	40	44	48	52
인당 처리건(b)	195	195	195	195	195
신속조정부 처리 건(E)	800	2,800	2,800	2,800	2,800
전체 처리 건(F=D+E)	7,820	10,600	11,380	12,160	12,940
당해 미결 건(G=C-F)	7,706	7,106	5,726	3,566	626

* 지속 증가 중이나, 피해구제 단계에서의 합의권고 활성화 등을 통해 2024년도 접수 건 수준 (약 1만 건)으로 유지 노력

** 공공기관 인력증원 절차를 통해 연간 4명(2025~2026년도 정기 증원 인력의 평균) 증원 가정
(자료: 한국소비자원)

- 그러나, 이러한 신속조정부의 운영이 내용 및 당사자 이해관계 등이 비교적 단순 명료해 정식 조정절차 외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사건에 한정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향후 한국소비자원은 대폭 확대된 규모의 사건 처리를 위해서

63) 2024년, 2025년 당초 예산 규모를 처리사건을 800여건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처리사건이 800건을 초과하여 수정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는 신속조정 대상 및 요건을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의 고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신속조정부를 도입한 2022년 이후에 2024년 분쟁조정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약 92일로 2022년 약 112일 대비 약 20일(△17.9%) 단축하였으나, 법정기한인 30일⁶⁴⁾보다 3배 가량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분쟁조정 평균처리 기간〉

(단위: 건, %, 일)

구분	2022	2023	2024	2025. 8.
평균처리기간	111.9	84.4	91.5	122.8

(자료: 한국소비자원)

-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제도 취지가 소송절차에 비하여 신속하고 저비용으로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내부 인원 재배치를 통한 분쟁조정담당 인력 보강, 분쟁조정담당 인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 교육 실시, 조정위원회 회의 간소화 절차 도입 등 사건처리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

64) 「소비자기본법」

제66조(분쟁조정의 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제58조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공정거래종합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 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출연금으로 지원받는 수지차보전기관으로, 2026년도 수입예산은 정부출연금, 기타수입, 수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출예산은 인건비, 기관운영비, 사업비, 수탁사업비로 편성됨.

□ 2026년도 수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165억 8,300만원으로 정부출연금 145억 900만원과 수탁사업비 15억 500만원, 기타수입 5억 6,900만원으로 구성됨.

2026년도 지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165억 8,300만원으로, 인건비 93억 9,700만원, 운영비 26억 8,000만원, 사업비 30억 100만원, 수탁사업비 15억 500만원으로 구성됨.

□ 지출 예산안의 주요 증액요인은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신규 사업인 공정거래 종합지원사업비 편성 등임.

〈2026년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 A
□ 수 입	13,927	14,662	16,583	1,921	13.1
정부출연금	11,742	12,757	14,509	1,752	13.7
수탁사업비	1,099	1,296	1,505	209	16.1
기타수입	1,086	609	569	△40	△6.6
□ 지 출	13,834	14,662	16,583	1,921	13.1
인건비	7,544	8,504	9,397	893	10.5
운영비	2,550	2,698	2,680	△18	△0.7
사업비	2,641	2,164	3,001	837	38.7
수탁사업비	1,099	1,296	1,505	209	16.1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예산안 설명자료)

2) 검토의견

- 공정거래종합지원은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가맹·대리점거래 분야를 제외하고, 일반불공정거래 및 하도급, 유통, 약관 분야 등 모든 갑을분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전문상담, 소송 지원 등 맞춤형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원스톱 종합 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 사업으로,
- 신설되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교육장 및 전문상담실, 사무공간 임차료 등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6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공정거래종합지원 사업비 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세부 내역
공정거래 종합지원	-	680	680	- 소송대리지원금 및 소송지원심의회 안전 검토비 등 97백만원 - 온라인플랫폼 및 입점사업자 등 연석회의, 간담회 등 개최·추진 23백만원 - 공정거래종합지원 공공요금 15백만원 - 공정거래종합지원 홍보 및 설명자료 제작 등 50백만원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여비 28백만원 -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운영 기본경비 및 일반수용비 등 12백만원 -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교육장 및 전문상담실, 사무공간 관리용역비 등 162백만원 -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교육장 및 전문상담실, 사무공간 임차료 등 293백만원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현재 지원 대상이 다를 뿐 사업 목적 및 내용이 유사한 가맹종합지원센터과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영세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등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교육·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⁶⁵⁾ 및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

⁶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가맹본부에 대한 교육·연수
2.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연수
3. 가맹거래사에 대한 교육·연수(제2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포함한다)
4. 가맹본부가 이 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보급·확산
5. 그 밖에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 66)(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4호, 2020. 6. 11., 제정)에 따라 지정된 가맹종합지원센터는 2021년 3월에 정식 개소하였음.

- 공급업자 및 대리점에 대한 교육·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2항⁶⁷⁾ 및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⁶⁸⁾(공정위고시 제2022-8호, 2022. 6. 8. 제정)에 따라 지정된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2023년 3월에 정식 개소하였음.

□ 그러나 최근 티몬·위메프, 발란 등 온라인플랫폼의 미정산 사태로 영세 입점업체들에게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사업자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기능이 현재 부재한 상황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66)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교육기관 등의 명칭)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명칭은 “가맹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6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대리점거래에 대한 교육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공급업자 및 대리점에 대한 교육·연수

2. 공급업자가 이 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체계를 말한다)의 보급·확산

3.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의 홍보

4. 그 밖에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설·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68)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은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 이에 대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종합지원 사업을 통해 전
 갑을분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및 적시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 분야 원스톱 종합지원서비스를 제
 공하여 전 분야를 아우르는 피해구제 및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
 획임.

〈가맹종합지원센터,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안) 비교〉

(2025. 10. 기준)

구 분	가맹종합지원센터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종합 지원센터(안)
센터운영 근거	· 가맹사업법 제31조의2 · 공정위 고시 제2020-4호	· 대리점법 제12조의4 · 공정위 고시 제2024-5호	-
지원대상	영세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	공급업자 및 대리점	일반불공정거래 및 하도급유통악화 분야 등 모든갑을분야 사업자
센터지정일	2020. 9.	2022. 9.	-
센터개소일	2021. 3.	2023. 3.	2026. 3.
인원 (팀장, 팀원, 변호사)	9명 (팀장 1명, 팀원 8명(변호사 2명 포함))		16명
장소	서울상공회의소 (2020. 10. 30.)	-*	임차 예정
2025년도 예산	203백만원	138백만원	-
2026년도 예산(안)	317백만원**		680백만원
사업내용	① 맞춤형 전문상담 ② 가맹점사업자, 대리점주, 수급사업자 등 영세 소상공인·중소사업자 법률지원 ③ 법 위반 및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④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 및 갈등완화 촉진 ⑤ 정책 및 제도 홍보		

* 대리점종합지원 관련 신규 예산 및 인력 부족, 경상운영비 감액(△118, 공공기관 공통감액)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청사 공간을 재배치하여 운영공간을 조성

** 2026년부터 통합 편성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공정거래종합지원 사업은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온라인플랫폼 거래를 포함한 일반불공정거래, 하도급, 유통, 약관 분야 등 경제적 약자 보호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예산·결산 등 국가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12조⁶⁹⁾에 따르면 국가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 특정한 목적 달성 필요시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기관에 출연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종합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⁷⁰⁾.

문 의 처
02)6788-5109
02)6788-5114
02)6788-5115

69)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70)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제2203028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4585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임.